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389-10

www.kipo.go.kr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청

발간에 즈음하여...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간·기업간의 지식재산을 둘러싼 경쟁은, 이제 무형의 지식재산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개인·기업 및 국가발전의 핵심 원천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개청된 1977년 2만 5천여 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가 2015년 47만 5천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1984년 10건에 불과하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규모도 2015년 1만 4천여 건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특허청은 1999년 세계 최초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시스템을 개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2003년 특허고객상담센터를 설립하여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관한 의문사항을 한 번의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상담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산업재산권을 출원, 등록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발간되는「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책자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령과 제도, 출원·등록 절차, 각종 수수료 정보 및 특허청의 지원 사업 등 지식재산의 출원·등록 및 창출·보호·활용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된 법령, 변경된 제도·절차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상표의 정의·표장의 개념 등 상표법 개정사항, 2017년 3월 시행 예정인 심사청구기간 단축 및 특허취소 신청제도 도입 등 특허법 개정사항, 그리고 2016년 4월부터 시행된 디자인권의 회복요건 완화 등 디자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특허고객이 자주 문의하는 서식뿐만이 아니라 작성 예제를 수록하여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책자 뒤편에 '찾아보기(색인)'을 추가하여 지식재산관련 용어를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일반인, 학생, 기업인, 연구원 등 모든 분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지식재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우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 이 재 우

www.kipo.co.kr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이 책은 지식재산권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활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CONTENTS·

제1장 기초다지기

Ⅰ. 지식재산권의 기초 / 9

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10
 Tip. 상표의 구분 / 12
2. 우리 특허법의 기본 원칙 및 특허 등록 요건 / 14

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19

1.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및 정보 / 20
2.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 23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Ⅰ.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 33

1. 선행기술 정보란? / 34
2. 정보 요청 및 검색은 이곳에서 / 35

Ⅱ. 출원 따라하기 / 37

1.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 출원하기 / 38
2.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 42
3.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 44
4. 분할출원·변경출원 및 출원 보정 / 45
5. 특허·상표의 국제출원 / 48
6. 출원 관련 문의 / 69

Ⅲ. 심사 알아보기 / 71

1. 특허·실용신안 심사 절차 / 72
2. 디자인 심사 절차 및 특유의 제도 / 78
3. 상표 심사 절차 및 제도 / 82
4. 맞춤형 심사제도 운영 / 86

Ⅳ. 등록 신청하기 / 91

1.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 92
2. 기본 등록 업무 / 93
3. 변동 등록 업무 / 97
4. 등록보정제도 / 102
5. 등록 관련 문의 / 104

Ⅴ. 심판절차 밟기 / 105

Tip. 특허분쟁의 첫걸음, 경고장 바로알기/ 106
특허(상표)침해분쟁 바로알기 / 106
지식재산권 침해 기본 판단법 / 107

1. 특허심판이란? / 108
2. 특허심판의 종류 / 109
3. 특허심판 이용안내 / 111
4.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 114
5. 특허심판 기간연장 관련 절차 / 116



Ⅵ. 수수료 납부하기 / 117

1. 수수료 일람표 / 118
2. 기타 출원 관련 수수료 / 120
3. 기타 등록 관련 수수료 / 122
4. 기타 심판 관련 수수료 / 123
5. 각종 서류 등·초본 발급신청료 등 / 124
6. PCT 국제출원 수수료 / 125
7.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수수료 / 126
8.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 127
9. 출원료 등의 감면안내 / 128
10. 수수료 납부요령 및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 136
11.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도 / 137
12. 지식재산 포인트(IP POINT)제도 / 139

제3장 특허청 고객지원 사업

Ⅰ. 특허고객 서비스 업무 / 143

1. 특허청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운영 / 144
2.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 145

Ⅱ.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지원사업 / 147

1. 지식재산 창출 지원 / 148
 1.1.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 148
 1.2.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 149
 1.3. IP Star 기업 육성 사업 / 150
 1.4. 전통산업 IP 경쟁력 제고 사업 / 151
 1.5. 여성발명 지원 / 152
2.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역량강화 / 153
 2.1.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 153
 2.2.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지원 / 154
 2.3. 창의발명 인재 양성 사업 / 155
 2.4. 정부 R&D 우수특허창출지원 / 156
 2.5.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 157
 2.6.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사업 / 158

Ⅲ.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사업 / 159

1. 지식재산 금융 지원 / 160
 1.1. 특허기술 평가 비용 지원 / 160
2.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 161
 2.1. 지식재산(IP) 활용 지원 / 161
 2.2. 반도체 IP 수출 지원 / 162
 2.3.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 163

Ⅳ.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결 지원 / 165

1. 국내 지원 사업 / 166
 1.1.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166
 1.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 167
2. 해외 지원 사업 / 168
 2.1.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 168
 2.2.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 제공 / 169
 2.3.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 170

〈붙임〉

1. 자주 문의하는 서식 리스트 및 작성예제 / 172
2. 특허청 유관기관 현황 / 185
3.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 188
4. 권리별 법정 기간 / 190
5. 출원·등록·심사 및 심판 주요통계 / 197
6. 문의전화 안내 일람표 / 203
7. 찾아보기(색인) / 20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제 1 장

기초다지기

Ⅰ. 지식재산권 기초

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특허청



제1장 기초다지기

Ⅰ. 지식재산권의 기초

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2. 우리 특허법의 기본 원칙 및 특허 등록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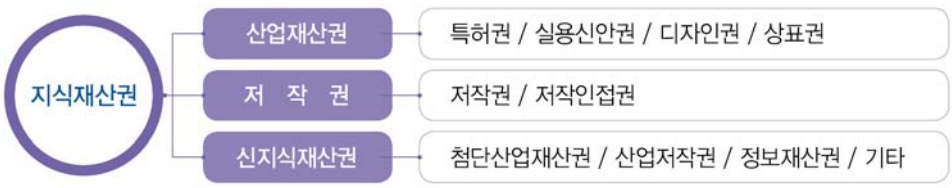
01

| 지식재산권의 기초 |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지식재산기본법 §3조1호)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함



○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 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가능

| 특허분쟁의 예방 및 권리보호 |

자신의 발명 및 개별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보호 가능

|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 가능

|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

○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함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정 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 수준이 고도화된 것 (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있는 고안 (소발명)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보 기 (전화기)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	전화기 제조회사가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상호·마크
존속 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구법 적용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구법 적용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특허 원천, 핵심기술	실용신안 Lie cycle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	디자인 물품의 외관	상표 상품의 명칭
엔진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백미러 컴홀더 자동차도어 의자높낮이 조절장치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자동차명칭 (제네시스, 그랜저 등) 제작사 명칭 (현대, 도요타, BMW등)

Tip

● 상표의 구분

구분	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증명표장
정의	자기의 상품(서비스를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국내에서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업무를 나태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동종업자의 법인이 단체 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표장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이 특정한 품질 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
사례				 세계일류상품
등록번호	40-0605404	42-0003607	44-0000033	47-0000011
권리자	씨제이 주식회사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남해죽방멸치 영어조합법인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출원번호 예시** 40-2016-0000150
 ▼ ▼ ▼
 권리 년도 일련번호

- **등록번호예시** 40-0256534-00-00
 ▼ ▼ ▼ ▼
 권리 일련번호 구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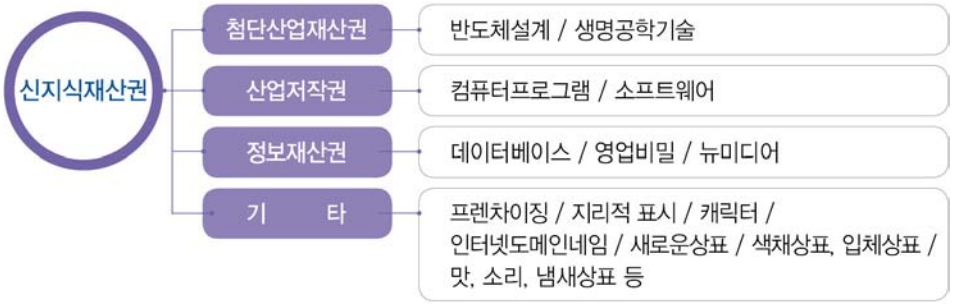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써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말함.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음

구 분	저 작 권	저 작 인 접 권
정의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써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됨
예시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등	• 실연자가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 •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 •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 할 권리
보호기간	•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창작한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음 다음 해부터 70년간 •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 실연의 경우의 그 실연을 할 때부터 70년간 • 음반의 경우에는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70년간 •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부터 70년간

신지식재산권이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말함



02

| 지식재산권의 기초 |

우리 특허법의 기본 원칙 및 특허 등록 요건

1. 선출원주의

① 동일한 발명(고안)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실용신안)를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 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한 자에게 부여(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
- 선발명주의 : 먼저 발명한 자에게 부여



② 시기적 기준(日기준)

- 다른 날짜 출원 :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같은 날짜 출원 : 협의(협의 불성립시 쌍방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음, 특허법제 36조 2항)

③ 주체의 동일성

- 타인간은 물론 동일인 간에도 적용(특허 및 실용신안)

2. 도달주의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가에 관해 도달주의와 발신주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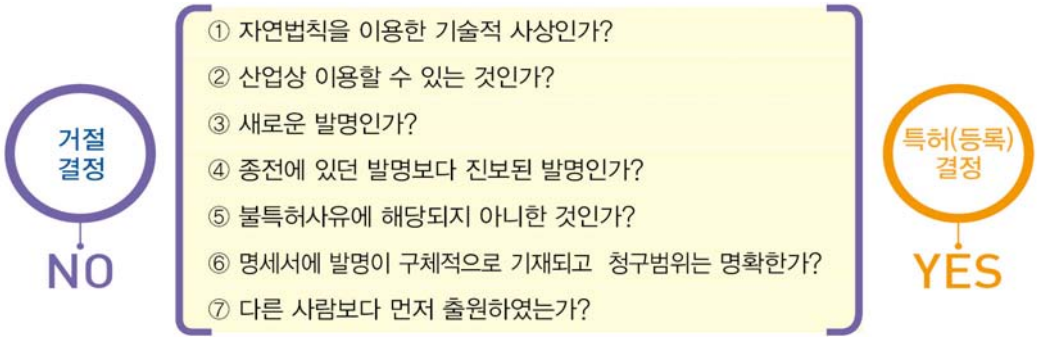
우리 특허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특허법 제28조 1항) 예외적으로 국내출원의 경우, 우편물의 발신일이 분명한 경우와 수령증으로 발신한 날이 증명될 경우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때에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음(특허법 제28조 2항)

3. 속지주의

1국 1특허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에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4. 특허 등록 요건

•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등록) 받을 수 없는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지폐 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특허법 제32조)
- 국방상 필요한 경우(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특허법 제41조)

▣ 신규성

① 신규성이란?

특허요건 중 하나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함

② 신규성 판단기준

- 시기 : 특허출원 시(시 · 분 · 초)
- 지역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제주의 (2006. 9. 30. 이전 출원은 국내주의)
 -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국제주의

③ 신규성 위반 사유

- 종래발명과 동일한지 여부

종래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④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 예외)

■ 출원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공지 등은 특허거절 이유에서 제외함

■ 대 상 : 본인의 자발적인 공개행위

2006. 3. 2. 이전출원	2006. 3. 3. 이후 출원
공지예외 대상을 1) 발명의 시험 2) 간행물에의 발표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4)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 서면으로 발표 5)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디자인은 대상에 제한이 없음)로 제한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 행위

-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출원일과 무관하게 모두 공지예외 대상에 포함됨

■ 요 건

- 공지일로부터 12개월('12. 3. 15. 이후 출원 : '12. 3. 14. 이전 출원은 6개월) 이내에 출원
- 출원시 공지 예외 주장 취지 기재
-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는 예외)
- 출원시에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정기간 또는 설정등록 이전의 기간에 공지 예외 주장을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2015. 7. 29.부터 시행)

▣ 진보성

① 진보성이란?

특허요건 중 하나로 종래발명에 비해 진보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요건을 말함

② 진보성 판단기준

■ 시기, 지역 : 신규성 판단기준과 동일

③ 진보성 위반 사유

■ 종래발명으로부터 해당 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산업상 이용가능성

① 의의

발명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당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나 산업 이외의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음

②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의료행위
-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영구기관 등)


특허청



제1장 기초다지기

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및 정보
2.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 알아보면 유익한 정보 |

01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및 정보

1. 포괄위임등록(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의2)

-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특정사건을 명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등록신청서(포괄위임장 첨부)를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함
-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제출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 효과

2. 직무발명

- 의의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함
- 보상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3. 이용발명

- 의의 : 선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a)를 추가하여 새로운 특허(A+a)를 받았더라도 후등록 특허권자는 선등록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후등록 특허(A+a)를 이용발명이라 함
- 효과 : 선 특허권자는 후 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 특허권자는 선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특허발명(A+a)를 실시할 수 있음

4. 컴퓨터 S/W 보호

▣ 컴퓨터 S/W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 저작권법에 의해 프로그램의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
-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불법복제방지에 효과적이나 S/W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 등 S/W 기술은 보호 불가능

▣ 컴퓨터 S/W의 「특허」에 의한 보호

- S/W에 사용되는 기술(예 : 인터넷상 동영상기술 , 데이터압축 기술 등)은 다른 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로 보호 가능(단, 하드웨어와 결합형태이어야 함)
- 특허에 의한 보호는 아이디어 기능까지 보호가 가능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보다 강력한 권리보호 가능

▣ 영업방법(BM) 관련 발명

- 영업방법관련 발명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써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말함

5.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 정의 :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 보호법규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권리의 발생 및 효력 :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 등록을 신청하면, 특허청은 등록신청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 후 설정 등록함
 - 배치설계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등록신청이 형식적 요건에 위배되거나 창작성이 결여된 경우에 권리의 등록이 취소됨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함

6. 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 보호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고안)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고안)을 서면으로 경고한 후 또는 업으로 실시한 자가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고안)을 안 때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 청구 가능.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 등록된 이후에 행사 가능

▣ 특허권(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사상 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 형사상 보호(특허침해죄)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

※ 특허권 등 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인 반면, 상표권 침해죄는 고소 없이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7. 저촉관계

▣ 관련 법령

-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저촉관계의 유형

(1) 특허권과 디자인권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보호객체가 상이하여 선원주의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호 권리간에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선출원 디자인권의 창작의 대상이 일정한 형상, 모양을 갖는 장난감에 관한 것일 경우와 후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구성을 갖는 장난감에 관한 것일 경우 양자는 상호 저촉관계에 해당한다.

(2) 특허권과 상표권

최근 입체상표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물품자체의 형상을 표시하는 입체상표가 상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물품의 형상에 관한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특허권과 상표권의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02 | 알아보면 유익한 정보 |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 특허·실용신안

1. 특허취소 신청제도 도입(2017. 3. 1. 시행)

▣ 도입 배경

1인당 심사건수가 과다하여 특허품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사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기술문헌의 급증으로 유사 기술문헌을 완벽히 검색한 후 심사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등 제3자 참여로 등록특허를 초기에 재검토한 후 부실 특허를 조기에 걸러냄으로써 권리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

▣ 개정 내용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신규성·진보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 특허공고 후 6개월까지 누구든지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취소를 신청하면 검토하여 하자 여부를 신속하게 피드백

▣ 주요 절차

- (신청기간)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결정계" 특허취소 신청
- (신청이유) 특허문헌·간행물에 근거한 신규성·진보성 등
- (심리개시) 취소신청이유를 종합·정리 후 일괄하여 심리진행
- (불복절차) 취소결정만 불복 가능, 특허권과의 소송에 특허청이 대응

2. 심사청구기간 단축(2017. 3. 1. 시행)

▣ 도입 배경

특허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일부터 5년 이내 심사청구를 해야 하나, 그 기간이 길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 확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조정할 필요

▣ 개정 내용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3.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가능 기간 연장(2017. 3. 1. 시행)

▣ 도입 배경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을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받기 위해서는 무권리자의 특허 등록공고 후 2년 이내 및 무권리자의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해야 하나, 등록공고 후 2년이 지난 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개정 내용

무권리자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까지만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

4.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2017. 3. 1. 시행)

▣ 도입 배경

정당한 권리자의 효율적 구제수단 마련을 위해 현재의 정당한 권리자 출원을 통한 방법 이외에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도 마련할 필요

▣ 개정 내용

정당한 권리자가 해당 특허권의 이전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도 무권리자의 특허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2트랙 보호 제도 마련

▶ 상표·디자인

1. 상표등록공고제도 도입(2016. 9. 1. 시행)

▣ 도입 배경

출원공고 후에 상표등록출원 내용이 다수 변경되어 등록됨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이 국민에게 공지되지 않아 등록원부를 보기 전까지는 최종 상표권 등록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 개정 내용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 · 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도록 함

2. 상표등록의 불사용취소심판제도 변경(2016. 9. 1. 시행)

▣ 도입 배경

- 불사용 저장상표(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누적으로 인하여 출원인의 상표선택의 범위가 좁아지고, 취소심판 청구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심리의 지체 발생
-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등록취소가 확정되더라도 취소심판 청구일과 등록취소 심결일 사이에 상표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잔존

▣ 개정 내용

-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변경

3.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에 관한 규정 삭제(2016. 9. 1. 시행)

▣ 도입 배경

- 동 조항은 수요자의 잔상효과로 인한 혼동방지 및 원권리자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도입(1973. 2. 8.)되었으나, 등록상표간 권리이전이 허용되고, 2인 이상의 타인에게 사용권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으로 출처의 혼동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고, 소멸된 상표가 사용된 적이 없다면 권리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 존치 이유가 적을 뿐만 아니라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출원인의 상표선택권을 제한

▣ 개정 내용

■ 상표법 제7조제1항제8호, 제8호의2 및 그 규정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4항을 삭제하여, 상표권 소멸 후 1년을 기다림 없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4. 디자인권의 회복요건 완화(2016. 4. 28. 시행)

▣ 도입 배경

등록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은 실시 중인 디자인만 가능하여 실시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따라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실시 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실시 중이 아닌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권리회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디자인권의 활용 가능성을 높아지게 할 필요성 대두

▣ 개정 내용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등록디자인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당 규정 삭제

▣ 주요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납부서)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

5. 등록료 반환규정 신설(2016. 4. 28. 시행)

▣ 도입 배경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여도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해 주는 규정이 없어 디자인권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없었으므로 반환규정 신설 필요

▣ 개정 내용

디자인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반환

▣ 주요 절차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별지 제2호 서식(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 신청서)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특허청에 제출

▶ 심판

1.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도입(2016. 4. 28. 시행)

▣ 도입 배경

특허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심판결과 심판청구인의 귀책 없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취소)된 경우 또는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등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음

▣ 개정 내용

① 거절결정 불복심판결과,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 반환

② 심리종결을 통지받기 전 심판청구 또는 당사자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또는 참가신청료 반액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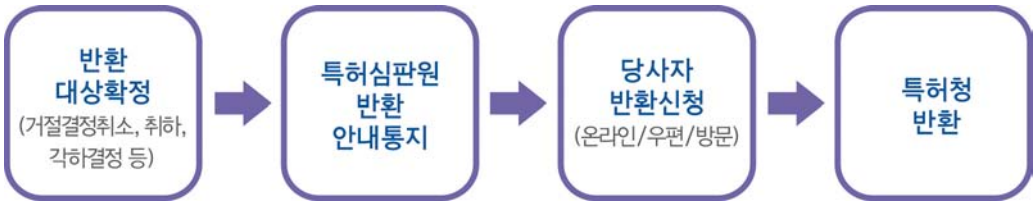
③ 심판청구가 결정으로 각하되고 확정된 경우와 당사자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또는 참가신청료 반액 반환

※ 산업재산권법 개정시기가 달라서 시행일에 차이가 있음

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2016. 4. 28. 시행

②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 2016. 6. 30. 시행

▣ 주요 절차



※ 관련 서식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의 민원서식 다운로드 또는 홈페이지 → 수수료 관리 → 수수료반환 →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 메뉴 통해 진행

2. 영상 심판사건 설명회, 심판관 면담제도 도입(2016. 1. 1. 시행)

▣ 도입 배경

대부분의 심판청구인, 대리인 등이 수도권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구술심리, 심판사건 설명회나 심판관 면담을 위해서 대전 심판정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었으며, 2014년 4월부터 당사자계 심판(무효, 취소심판 등)에 한하여 서울-대전 간 원격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개통하여 운영중에 있음

▣ 개정 내용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구술심리뿐만 아니라 모든 심판사건(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설명회, 심판관 면담에서도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

- 당사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영상심판정에 출석하고, 심판관은 특허심판원(대전) 심판정에서 심판사건의 구술심리, 설명회, 면담 등을 진행



▣ 주요 절차

심판사건신청서(구술심리),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개최신청서(설명회), 면담신청서(면담)의 신청이유란에 영상구술심리시스템 신청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심판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 관련 서식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의 민원서식 다운로드 또는 서식작성기(SW)를 통해 작성 가능

3. 심판사건별 송달장소 변경 및 송달영수인 제도 도입(2016. 1. 1. 시행)

▣ 도입 배경

심판청구인별로 통지서/심결문의 송달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였으나, 심판사건별로 송달장소를 변경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 개정 내용

당사자가 심판사건별로 송달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 서류를 당사자 본인에게 인계할 송달영수인을 송달장소와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신설

▣ 주요 절차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에 우편/방문 신청(향후 온라인 신청 가능) → 신고서 수리 이후 심판서류 등을 사건별 송달장소로 송달

※ 관련 서식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의 사이버민원안내 → 심판서식에서 다운로드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Ⅰ.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Ⅱ. 출원 따라하기
Ⅲ. 심사 알아보기
Ⅳ. 등록 신청하기
Ⅴ. 심판절차 밟기
Ⅵ. 수수료 납부하기


특허청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Ⅰ. 출원 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1. 선행기술 정보란?
2. 정보 요청 및 검색은 이곳에서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거나 현실화하는 첫 단계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나의 아이디어를 나보다 먼저 특허등록해 놓았는지 알아봐야겠지요!"

01

| 출원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

선행기술 정보란?

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도면 등이 게재된 정보자료





Q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의 유용성은?

A 특허정보자료를 목적에 맞게 상호 연관시켜 수집·분석함으로써 기술개발, 권리취득 및 기업경영 등 각 단계의 의사결정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02

| 출원전, 선행기술 정보검색 |

정보 요청 및 검색은 이곳에서

1. Internet 이용 국내·외 정보 검색

▣ 특허정보넷 KIPRIS 검색서비스

2001. 1.부터 KIPRIS를 통해 국내·외 특허정보의 무료 제공

- 국내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서지와 전문
- 해외
 - 서지·전문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및 WIPO 특허
 - 서지·초록 : 호주, 러시아, 대만
- 특허청 행정처리정보, 등록정보 및 심판정보 조회서비스
- 해외이용자를 위한 영문홈페이지 및 검색 인터페이스
- KIPRIS 나의관심특허 메일링서비스 및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
- 초보자도 쉽게 원하는 특허정보 검색이 가능한 KIPRIS 문장 검색서비스 제공



- 해외 공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한, 일→한, 한→영 및 중→한 자동번역서비스 제공

▣ 국내 검색 사이트

기관	주 소	구분
한국특허정보원(KIPI)	http://www.kipris.or.kr	무료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http://www.ndsl.kr	
윕스(WIPS)	http://www.wipson.com	유료
위즈도메인(WISDOMAIN)	http://www.wisdomain.com	
줌테크놀러지[브랜드워치]	http://www.brandwatch.co.kr	
마크프로	http://www.markpro.co.kr	

▣ 해외 산업재산권 검색 사이트

기관	주 소		구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국제특허	http://patentscope.wipo.int	무료
	국제상표	http://www.wipo.int/branddb/en	
	디자인	http://www.wipo.int/designdb/en	
Cambia(Patent Lens)	https://www.lens.org/lens		
Google(Google Patents)	https://www.google.com/patents		
Questel	https://www.orbit.com/		유료
THOMSON REUTERS	http://thomsonreuters.com		
LEXISNEXIS	http://lexisnexis.com/totalpatent/		

외국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을 검색하시려면,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지식재산권제도 → 해외 주요사이트 → 국제 특허검색DB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한 정보 검색 및 요청

▣ 특허청 도서관

직접 방문과 전화에 의한 지식재산권 정보자료의 검색 및 원문복사 서비스 제공

- 특허문헌(공보 등 특허서류) 검색 및 열람, 복사서비스
 - ☎ 042)481-5124, FAX 042)472-3462
- 비특허문헌(학술지, 지식재산권 자료 등) 검색 및 열람, 복사서비스
 - ☎ 042)481-5130, FAX 042)472-3462
 - 우)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4동(둔산동)

※ 복사료 : 일반우편-1page당 100원 / FAX- 1page당 300원

▣ 서울사무소

- ☎ 02)568-6221, FAX 02)557-8414
- 우)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4~5층(역삼동, 한국지식재산빌딩)

▣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자료열람실

▶ <붙임>3 참고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Ⅱ. 출원 따라하기

1.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 출원하기
2.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3.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4. 분할출원·변경출원 및 출원 보정
5. 특허·상표의 국제출원
6. 출원 관련 문의

01

| 출원 따라하기 |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 출원하기

1. 온라인 출원하기 : 특허로홈페이지(www.patent.go.kr)

▣ 사전절차



①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 산업재산권 출원인의 고유번호로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출원인은 사전에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온라인 특허고객번호 신청시에는 미리 사용인감 이미지(JPEG 포맷)를 준비하여 특허고객번호 신청 시 첨부해야 함
-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 기재란에 반드시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장 또는 서명 사용(미기재시 반려대상)

※ 특허고객번호 신청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좌측 → 전자출원 시작하기 →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좌측 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에서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별지 제 4호 서식)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

특허고객번호 신청시 출원인란 작성방법 〉〉〉

① 출원인이 자연인(개인)일 경우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은 되었으나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시는 자연인으로 신청

②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출원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 대한민국(소속기관장)
④ 출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자치단체명
⑤ 출원인이 사립학교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학교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⑥ 출원인이 국·공립대학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시 명칭표기 방법 예시
① 중앙행정기관 : 대한민국(행정자치부장관)
②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 대한민국(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장)
③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④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시,군,구) : 경기도,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화성군, 충청북도 영동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전광역시 서구[구는 자치구에 한정]
⑤ 국립대학교 : XX대학교 산학협력단(2005.7.1일부터 전담조직으로 출원)
⑥ 광역교육자치단체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교육감), 충청남도(충청남도 교육감)
* 지방자치단체법률 36조 근거 하급 교육행정기관은 법인이 아니어서 출원인 적격 없으므로 광역자치단체명의로 하여야 함
⑦ 국·공립 고등학교 : 대한민국(경남항공고등학교장), 충청남도(공주고등학교장)

② 공인인증서 등록

특허고객번호 부여가 승인된 후에는 출원인 명의로 지정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특허청에 등록 후 산업재산권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PCT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WIPO)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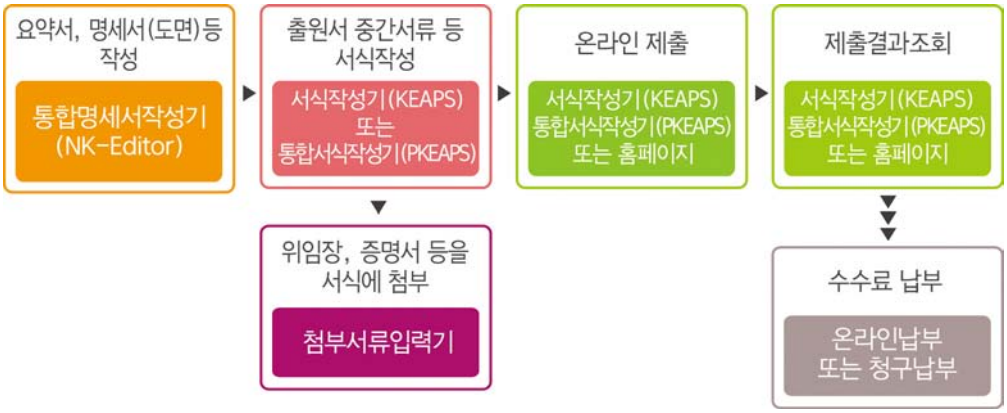
※ 공인인증서 등록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좌측 → 전자출원 시작하기 → 인증서등록"에서 할 수 있습니다.
※ 2013. 1. 1. 특허청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특허청인증서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공인인증서(은행용, 보험용, 증권용, 특허업무용, 범용)로 단일화
※ 국제출원(PCT) 출원 시 WIPO 인증서는 직접 WIPO홈페이지에서 발급
(특허청 인증서 → WIPO 인증서 변환 서비스 중지)

③ 전자출원 SW 다운로드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전자출원 SW 설치에서 다운로드

※ 전자출원 SW 종류
- 서식작성기, 통합서식작성기: 서식작성 SW로 출원서, 심판청구서, 보정서 등 각종 법정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통합명세서작성기 : 특허·실용신안의 명세서, 디자인 도면, 심판청구의 취지와 청구 이유, 의견 내용 등 법정서식에 첨부하는 별지 등을 작성하는 프로그램

■ 전자출원 절차(특허로-출원신청- '전자출원 매뉴얼' 참고)



④ 서식/명세서 작성

전자출원SW를 이용하여 출원관련문서(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와 첨부문서(위임장, 증명서 등)를 작성

※ 첨부서류가 존재하는 경우 첨부서류 입력기를 이용하여 해당문서를 스캐닝한 후 서식작성기에 첨부

※ 특허청에 발송하는 통지서(.PDF)는 '서식작성기'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⑤ 온라인 제출

작성된 전자문서를 특허청에 온라인 제출하고, 접수번호(납부자번호), 출원번호, 심판번호 등을 부여받는 단계

⑥ 제출결과 조회

■ 특허청에 제출한 문서의 처리결과 및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단계

■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행사항과 제출된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출원신청 → 제출결과조회에서 인증서를 통해 접속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출원하기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작성한 뒤 이동식 저장매체(USB, 하드디스크, FD 등)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 SW 설치에서 다운로드

※ 인터넷 출원가능 시간

기 간	시 간
평 일·토요일·주중공휴일	00:00 ~ 24:00
일요일	09:00 ~ 21:00

2. 서면 출원하기(우편, 방문 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좌측 하단 → 전자출원 → 민원서식다운로드

▣ 방문 접수

■ 특허청 고객지원실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층(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특허청 당직자에게 24:00까지 제출가능

■ 특허청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4~5층 (역삼동, 한국지식재산빌딩)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당직자에게 24:00까지 제출가능

▣ 우편 접수

■ 우)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단,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 도달일 인정)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 신규 출원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가 교부되며, 통지서에는 고유의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기재됨

(제출서류가 출원 이후에 제출하는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증만 발급)

※ 접수된 서류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서류라면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서류접수 익일까지 납부

-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출원서 등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를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

02

| 출원 따라하기 |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1.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발명이 물품(기계, 기구, 장치)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으로 출원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함
- 특허·실용신안에서 권리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이므로 특히 청구범위는 유의하여 작성할 필요 있음
- 상표등록출원 시 기재하는 지정상품은 출원하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기재해야 함.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불필요하게 많이 기재할 경우, 심사 시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 상표권 등록 후 3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품은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디자인등록출원 시 도면을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2010. 1.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디자인 업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3DM 파일을 2013년부터 추가함

※ 출원가능한 3D 모델링파일형식 : 3DS(3D Studio), DWG(Drawing), DWF(Design Web Format),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3DM(3 Dimensional Modeling)

※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출원한 경우 도면(참고도 포함) 보정시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디자인등록출원 시 화상 디자인의 움직이는 궤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참고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파일 용량이 1출원당 200MB가 넘지 않아야 함

※ 제출 가능한 동영상파일 형식 : SWF(Small Web Format),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 (Graphics Interchange Format)

※ 도면이 2D 이미지파일로 제출된 경우 동영상 파일 형식 또는 동영상 파일형식과2D 이미지파일의 혼합으로 참고도 제출이 가능하며,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참고도 제출이 불가능함

지식재산권의 순서은 이용 〉〉

2. 출원에 필요한 서류

<table>
<tr><th colspan="2">구분 \ 권리</th><th>특허·실용신안</th><th>디자인</th><th>상표</th></tr>
<tr><td rowspan="2">전자문서출원</td><td>ON-LINE</td><td>1. 출원서 : 1통

2. 요약서, 명세서, 도면 : 각 1통
※ 특허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도면 생략가능하나 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해야함</td><td>1. 출원서 : 1통

2. 도면* : 1통
※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 제출 가능
* 도면 : 가로16.5cm* 세로23.7cm 초과할 수 없음

사진 : 최대 가로10cm* 세로15cm이하, 최소 가로 7cm* 세로 10cm이상</td><td>1. 출원서 : 1통

2. 상표견본 : 1통(A4규격(21cm×29.7cm 이내)
※ 출원하는 상표가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2장 이상 5장 이내의 도면 또는 사진

3. 상표에 대한 설명서 : 1통
※ 출원하는 상표가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의 「상표의 설명」란 기재로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td></tr>
<tr><td>FD</td><td colspan="3">1장과 FD 제출서를 함께 제출</td></tr>
<tr><td colspan="2">서면출원</td><td colspan="3">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td></tr>
<tr><td rowspan="2">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td><td colspan="4">-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td></tr>
<tr><td colspan="2">-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td><td colspan="2">-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 출원 시)
-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1통(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출원 시)
-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통(업무표장 등록 출원 시)</td></tr>
</table>

※ 출원서 등 작성요령은 특허청 고객지원실, 서울사무소,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주로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좌측 하단 → 전자출원 → 서식다운로드
- 특허 출원서 및 명세서 작성 예제는'특허출원서'를 선택하신 후'작성 예제 다운로드'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3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1. 출원자격

특허(실용신안)	발명(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디 자 인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
상 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Q 외국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A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2. 출원일자

출원방법	출원일자
전자출원	서류제출을 클릭한 날
직접제출	특허청 제출일
우편접수	우체국 소인일자(단,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 도달일이 출원일이 됨)

※ 산업재산권은 동일한 내용인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 출원 따라하기 |

분할출원·변경출원 및 출원 보정

1. 분할출원(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50조, 상표법 제45조)

①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

② 효과 :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일로 소급함

③ 기간

■ 특허, 실용신안

2009. 7. 1. 이전 출원	2009. 7. 1. 이후 출원	2015. 7. 29. 등록결정 이후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단,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 내로 한정)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 및 송달한 후 3개월(단, 설정등록 이전)까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①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②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①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 의견서 제출 기간 ②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③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5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와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가능

■ 상표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가능

2. 변경출원(특허법 제53조·실용신안법 제10조(2006. 10. 1. 이후 출원을 기초로 하는 변경출원부터), 상표법 제44조)

① 대상 : 1) 특허와 실용신안 간, 2) 상표·단체표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 간, 3) 지정상품 추가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 가능(단,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변경 불가)

② 효과 : 변경출원은 원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③ 기간
- 특허·실용신안 : 원출원이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까지
- 상표 : 최초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3. 출원 보정

▣ 보정서 종류

① 제출원인에 의한 분류

- 통지에 의한 보정 : 특허청이 보정통지를 한 사항에 대한 보정
- 자진보정 : 특허청의 보정통지와 상관없이 출원인이 스스로 명세서 등을 보정

② 제출내용에 의한 분류

- 출원서 등 보정 : 제출한 서류의 1)서지 부분의 정정 2)발명자의 추가 및 삭제 3)미납된 수수료 납부 4)기타 첨부서류의 제출 5)상표 지정 상품 보정 등
- 명세서 등 보정 : 1)발명의 명칭 2)요약서 3)명세서 4)청구범위 5)도면 등의 보정
- 단독디자인과 관련디자인 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 일부심사 간 상호 출원변경을 하기 위한 보정

▣ 보정서 제출시 주의점

- 명세서 등 보정과 출원서 등 보정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보정서 사용
- 출원인 및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성명, 주소, 인감, 서명, 전화번호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이용
- 명세서 등의 보정은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단위로 보정
- 서면출원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전 : 〈식별번호〉단위 보정은 불가능하며〔식별항목〕단위의 서면 보정만 가능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후 :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단위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보정 모두 가능



▣ 보정의 정도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권리별 보정가능 기간

▶ <붙임>4의 '2. 보정기간' 참고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 〉〉〉

• **특허고객번호를 이중부여 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는 경우**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특허고객번호 정정]에 정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정정내용 증명 서류 : 사유서(양쪽 고객번호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동일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정보
- 외국인 : 성명과 주소로 확인
- 외국법인 : 명칭과 주소로 확인하며 대표자 정보도 동일하면 더 정확함

※ 양쪽 고객번호 상 정보가 다르면 출원인정보변경으로 정보를 일치시킨 후 특허고객번호 정정하는 것이 좋음

• **설정등록 이후 하나의 특허고객번호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 2008. 1. 1. 이전 등록된 건
- 설정등록된 이후 특허고객번호 정정은 불가능

■ 2008. 1. 1. 이후 등록된 건
- 아직 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신청을 하지 않은 건인 경우, 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 신청시 앞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하여 정정 가능

05

| 출원 따라하기 |

특허·상표의 국제출원

1. PCT 국제출원

▣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됨

▣ 해외 출원 방법은?

① 전통적인 출원방법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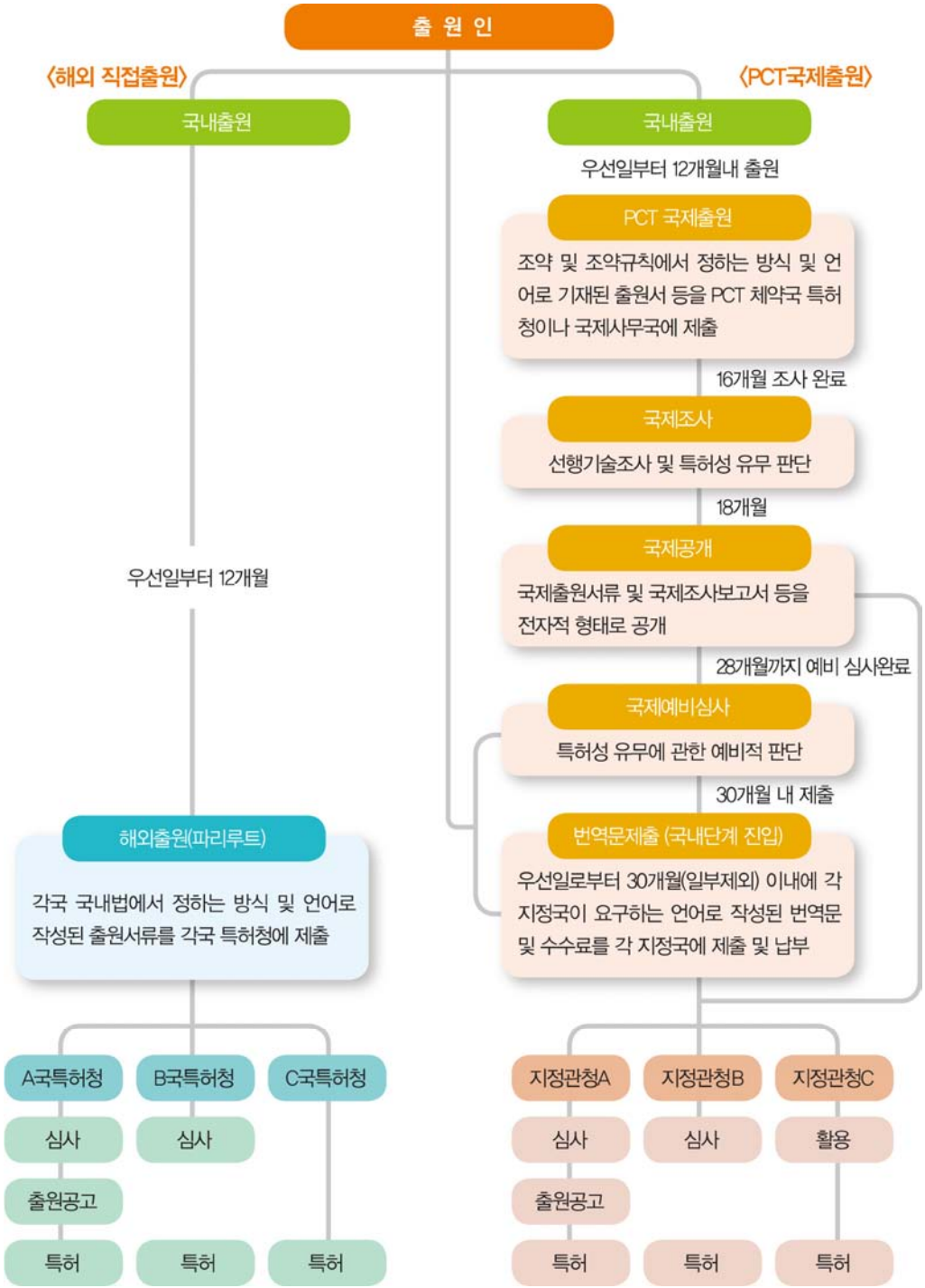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② PCT에 의한 출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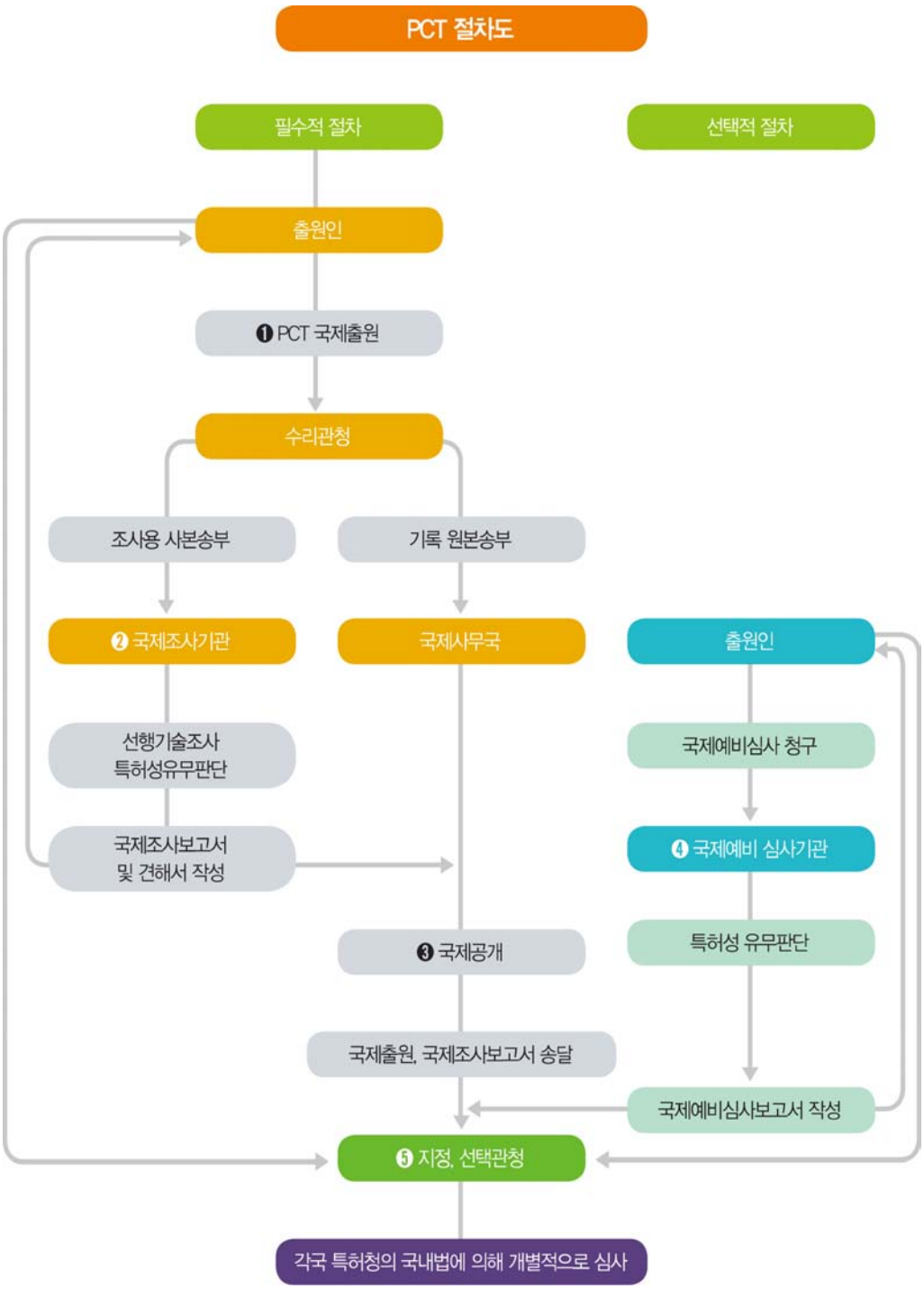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음

※ **특허, 실용신안에 한정**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 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 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따라 처리됨

해외 직접출원과 PCT 출원 비교



▣ PCT 국제출원 절차


PCT 절차도
필수적 절차
선택적 절차
출원인
❶ PCT 국제출원
수리관청
조사용 사본송부
기록 원본송부
❷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출원인
선행기술조사
특허성유무판단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국제예비심사 청구
❹ 국제예비 심사기관
❸ 국제공개
특허성 유무판단
국제출원, 국제조사보고서 송달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❺ 지정, 선택관청
각국 특허청의 국내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심사

① 국제출원

출원인이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수리관청은 서류작성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를 함. 방식심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국제출원일을 인정하고, 하자가 있으면 보정 또는 보완할 것을 출원인에게 통지함

■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자연인·법인), 그리고 이들을 대표자로 하여 이들과 공동출원하는 외국인,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

■ 국제출원서류

ⅰ) 제출서류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 서열목록(필요한 경우), 수수료계산서, 위임장(필요한 경우)

 ※ 명세서도 PCT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해야 함

- 미생물을 기탁할 경우에는 미생물 기탁증을 명세서의 일부로 작성·제출하여야하고, 유전공학관련 서열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록한 전자매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우선권증명서류 : 1부

 ※ 우선권 주장시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거나 특허청에 송달 신청해야 함

ⅱ) 제출방법

- 서면출원 : 국제출원서류 3부를 수리관청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PCT-SAFE를 이용한 전자출원

 ※ PCT-SAFE에 의한 출원서 작성 및 제출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출원신청 → PCT 국제출원을 통해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함

ⅲ) 배부처

- 특허청 고객지원실, 특허청 서울사무소, 특허청 홈페이지(www. kipo. go. kr), WIPO 홈페이지(www. wipo. int/pct/en)

■ 수수료납부

필수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 국제출원료, 조사료를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보정요구(가산료 부과)서가 발송되며, 그 보정 기간 내에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됨

- 국가지정 : 출원서의 제출은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가입된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있음
 다만, 독일, 일본, 한국의 경우 소위 "자기지정"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②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내국인이 신청 가능한 국제조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일본어 출원에 한함)
-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판단을 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함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참조하여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으며 당해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③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출원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출원후 일정시점에 이르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고 여기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

- 국제공개 시기
 - 일반공개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
 - 조기공개 :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
- 국제공개 형식
 WIPO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는 안내서를 발송하며 각 지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송부
- 국제공개 언어
 현재 국제공개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의 10개의 언어이며, 이들 언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각각 이들 언어로 공개됨
 ※ 2009. 1. 1.부터 기존에 한국어 출원인 경우 제출되던 국제공개용 영어번역문은 제출할 필요가 없음

④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함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에 관하여 심사한 후, 그에 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함

- 내국인이 신청 가능한 국제예비심사기관 :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국제조사절차를 일본특허청에서 행한 경우에 한함)

- 국제예비심사 청구기간

 국제조사보고서(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전(2004. 1.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개정된 조약에 의한 국내단계 진입기간(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단 우리나라는 31개월)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가(룩셈부르크, 우간다, 탄자니아(2016. 9. 1.)에 대하여 통상의 국내단계 진입기한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 청구 시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요약서는 해당되지 않음) 당해 보정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제출

-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착수(PCT규칙 69.1)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함

⑤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 등 제출

출원인이 국내단계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지정국에 대하여는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다만,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20개월)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국내출원 절차를 밟아야 함

- 번역문 미제출의 효과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상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PCT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 심사의 진행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자국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부여 여부를 결정함

※ 각국별 국내단계 진입기한
WIPO 웹사이트를 통해 체약국별 국내단계 진입기간 확인 가능
http://www.wipo. int/pct/en/texts/time_limits.html

국제단계(internaional phase)와 국내단계(national phase) ›››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 제출 이전 단계의 절차를 '국제단계 절차'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 절차'라 한다.



PCT 국제출원의 주요 기간별 절차 Timetable



※ 주요 기간별 절차를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 맞추어 '월' 단위로 표시하여 도표화한 참조 자료임

▣ PCT 국제출원의 장·단점

구 분		PCT 국제출원	해외 직접출원(파리루트)
PCT 장점	출원일 인정	1회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 → 간편	개별국가마다 직접 해외출원
	특허 가능성 제고	지정국가 진입 전에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절차를 통해 특허성 유무를 사전에 판단 → 유리	개별국가의 법률이 정한 특허요건에 따라 특허성 유무를 판단
	출원서류 작성	하나의 언어(우리나라 : 국어, 영어, 일어 중 택일)로 출원서류를 제출 → 용이	개별국가가 허용한 언어로만 출원서류 작성
	무모한 해외출원 방지	지정국에 진입(우선일부터 30개월 내)하기 전에 특허 획득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하여 국내절차 진입여부를 결정 → 불필요한 비용지출 / 무모한 해외출원방지	개별국가로 해외출원 전에 출원인이 직접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획득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수수료 감면	PCT 국제출원을 통한 국내단계 진입 시 자국의 특허 수수료를 일부 감면 → 일부 비용절감	수수료 감면은 자국 법률의 기준에 해당(중소기업, 장애인 등)하여야 하므로 외국인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음
PCT 단점	국제출원비용	PCT 국제출원 비용* 추가발생(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개별국 출원과 동일한 비용 소요) < 국제출원 비용 > * 국제출원료 + 조사료 등 : 최도 205 ~ 288만원 * 국제단계 대리비용 : 미정 추가소요비용 계 : 408 ~ 438만원	개별국가의 출원비용만 소요 → 비용절감(국제출원 비용 없음) ※ 국제출원단계의 비용 없음
	이중적 심사절차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은 후 국내진입 후 지정국에서 새로이 심사(2회)를 받아야 하므로 이중적 심사절차를 거쳐야 함	개별국가의 심사절차만 거침(1회) → 심사절차 간편 ※ 국제출원단계의 심사절차 없음
	기간의 엄격성	PCT 국제출원단계에서 준수기간(수수료 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넘길 경우 불이익 발생	개별국가 진입 후의 기간 준수의무는 PCT와 동일 ※ 국제출원단계의 절차 없음

▣ 용어해설

①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조사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기관

②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 발명의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실체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③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 IB)**
국제공개, 변경통지서 송부 등 PCT 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④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관청(특허청)

⑤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 DO)**
PCT 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⑥ **선택관청(Elected Office : EO)**
지정관청 중에서 예비심사결과가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국가의 특허청

▣ 참고사항

① **도달주의 채택**
PCT 국제출원은 국내출원과 달리 우체국 소인 확인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인정

② **지정국의 추가 또는 삭제 가능 여부?**
- 지정국의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
 - 지정국의 삭제는 "지정취하서"의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04. 1. 1. 이후 국제출원부터는 국제출원 시 특정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하지 않는 한 국제출원일 당시의 모든 체약국이 지정국이 되는 자동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지정국이 추가되는 제도는 없어짐

③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출원을 국어로 제출한 경우 우리나라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국내단계 진입기한 이내에 출원인의 성명·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주소, 국제출원일, 국제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특허법 제203조)

▣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A, B국가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A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의 효과

출원인은 일반심사에 비해 신속한 심사로 해외에서 조기에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은 외국의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함으로써, 심사품질 향상 및 심사 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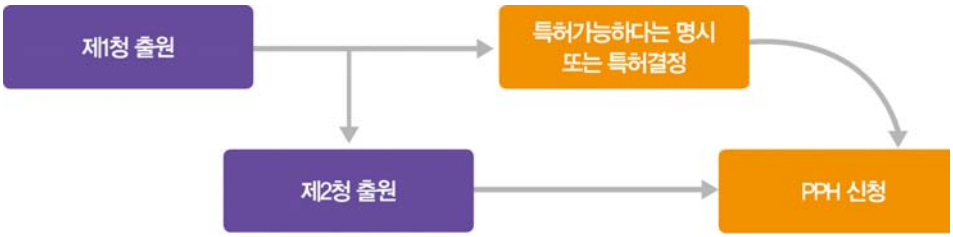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실시 현황

우리나라는 14개국(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오스트리아)과 시행중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통한 우선심사

(대상) 제1청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1청 출원의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항을 갖고있는 제2청 출원 ⇒ 우선심사



2.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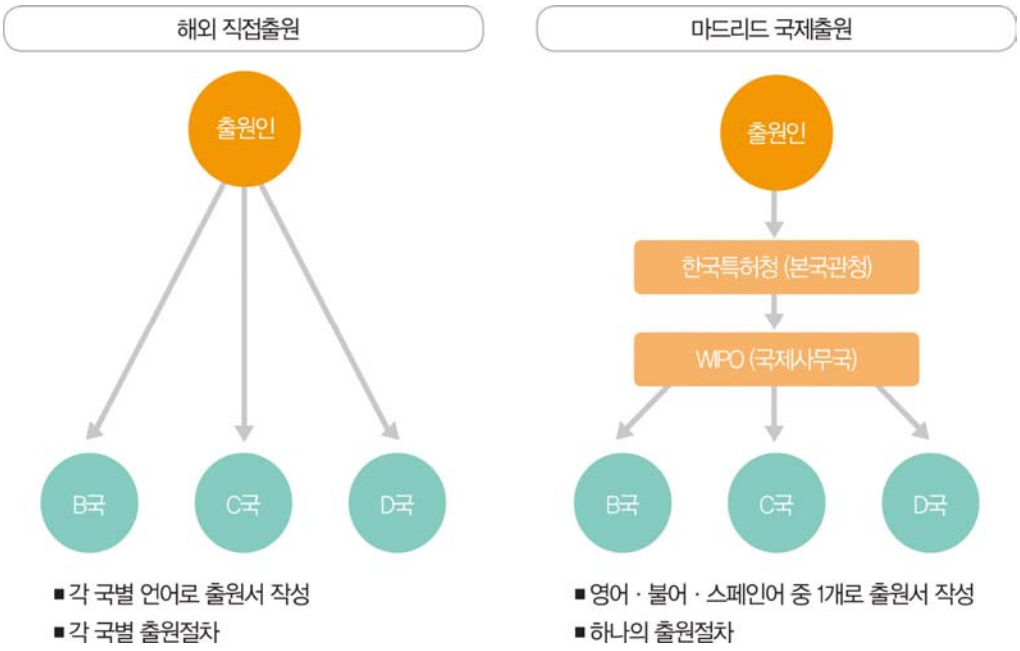
▣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함

▣ 외국에 상표를 출원하려면?

외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구분하면 2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파리협약에 근거하여 각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임

해외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의 비교



▣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요 및 효과

① 기초요건

i) 대상이 되는 표장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표장은 우리나라의 특허청(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상표등록출원(기초출원) 및/또는 등록상표(기초등록)의 표장과 엄격히 동일하여야 함

ii)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범위

국제출원에서 지정 가능한 상품(서비스업)은 기초 출원(등록)의 지정 상품(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그 범위 이내여야 함

② 출원인(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가진 자)

i)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계속 중인 자기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자기의 등록상표를 가진 자

ii)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③ 국제출원의 언어

i) 국제출원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본국관청이 정함

ii) 대한민국 특허청은 영어를 선택함

④ 국제등록

i) 국제사무국은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제출된 국제출원이 의정서 상의 요건에 합치한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국제등록부에 등록

ii)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접수한 때에는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iii)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iv) 국제사무국은 당해 국제등록 사실을 지정국관청 및 본국관청에 통보하고 출원인에게 증명 서면을 송부

⑤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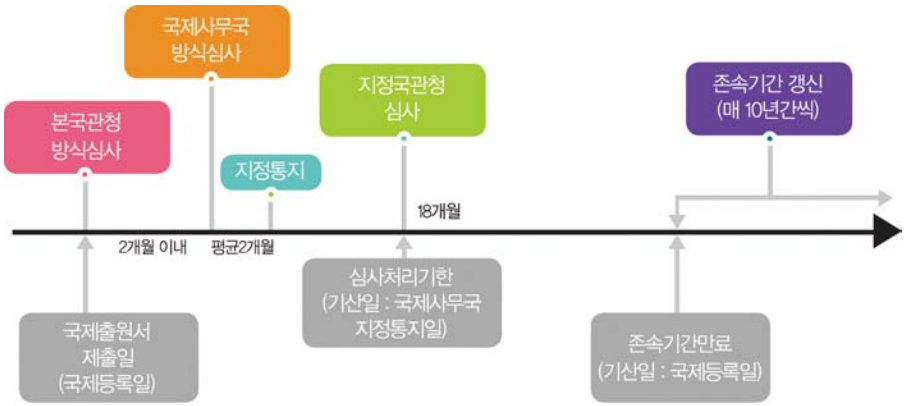
i)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ii) 국제사무국에 한 번의 갱신 신청으로 각 지정국 모두에 대하여 갱신 가능

⑥ 지정국관청 심사

지정 통지를 받은 각 지정국관청은 보호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일정기간(1년 또는 18개월)내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국은 그 표장을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야 함

※ 마드리드 국제출원 종합 절차도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장점 및 종속성

① 장점

ⅰ) 해외상표출원 절차의 간편
본국관청(대한민국 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여러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갖게 됨

ⅱ) 상표권 관리의 간편
각나라마다 존속기간 갱신, 소유권 이전, 명칭변경 신청 등의 절차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국제사무국에만 신청하면 모든 지정국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됨

ⅲ) 사후지정에 의한 보호 확장의 가능
사후지정 절차에 의해 최초 출원 시에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는 물론 국제출원 시에 특정 국가에 대하여 상품(서비스업)을 한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국제등록의 범위 이내라면 지정하지 않았던 상품(서비스업)을 사후에 추가 지정할 수 있음

② 종속성

ⅰ) 국제출원의 기초 출원(등록)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거절·포기·무효 등이 된 경우(아래의 제3자에 의한 집중공격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와 기초출원인의 자진 감축 보정, 기초등록권자의 존속기간 미갱신 등 스스로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킨 경우 모두 포함)

ⅱ) 국제출원에 의한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국제등록이 취소되고, 그 결과로 모든 지정국에서 국제등록의 효과도 국제등록이 취소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되는 것을 말함

iii) 집중공격(Central Attack)

본국관청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기초출원(등록)을 일정한 기간내에 소멸시키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 중인 것뿐만 아니라, 각 지정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까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임.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본국관청의 기초출원(등록)을 집중 공격하여 이를 소멸시키면 지정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모두 무효시킬 수 있음

▣ 용어해설

① 국제상표등록출원

i)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표장(상표)을 보호(등록)받기를 원하여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통지된 국제출원

ii)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내출원'으로 간주함

② 국제출원

좁은 의미로는 국내 출원인이 우리나라 특허청(본국관청)을 통하여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기위해 각 국가를 지정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출원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국제출원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모두 일컬어 국제출원이라고도 함

③ 국제등록(international registration)

i)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출원

ii)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이 된 이후 각 지정국에 상표가 출원되었음을 통보하고 각 지정국은 이때부터 심사를 하게 되므로 각 지정국에서의 국내등록과는 구별됨

④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서는 본국관청에 출원 중인 국내 상표등록출원 또는 본국관청에 이미 등록된 국내 등록상표가 있어야만 국제출원이 가능함. 이 때 전자를 기초출원, 후자를 기초등록이라고 하고 기초출원 및 또는 기초등록은 둘 이상일 수 있음

⑤ 본국관청(office of origin)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계속 중인 국가의 특허청

⑥ 지정국관청(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출원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관청

▣ 국제출원서 제출 등

①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서 제출

영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MM2) 1부를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 (전자출원과 서면출원 모두 가능)

※ 위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해외상표출원 > 국제출원절차 > 서식작성요령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금액을 스위스프랑으로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

▣ 가입국 현황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은 2016. 9. 현재 97개국임

▣ 참고자료

- 특허청 마드리드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 지식재산제도 > 해외상표출원
-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 : http://www.wipo.int/madrid/en
- 국제등록부 조회 홈페이지 : http://www.wipo.int/romarin
- 국·영문 상품명칭 검색 서비스 : 특허로 상품분류코드
- NICE 10판 영문명칭 검색 :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
- WIPO 인정목록 검색 : https://webaccess.wipo.int/mgs/
- 국제출원 수수료 계산 : http://www.wipo.int/madrid/en/fees/calculator.jsp

3.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

▣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면?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서 획득한 권리는 해당 국가에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되었다고 해도 외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 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임

▣ 외국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은?

①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표현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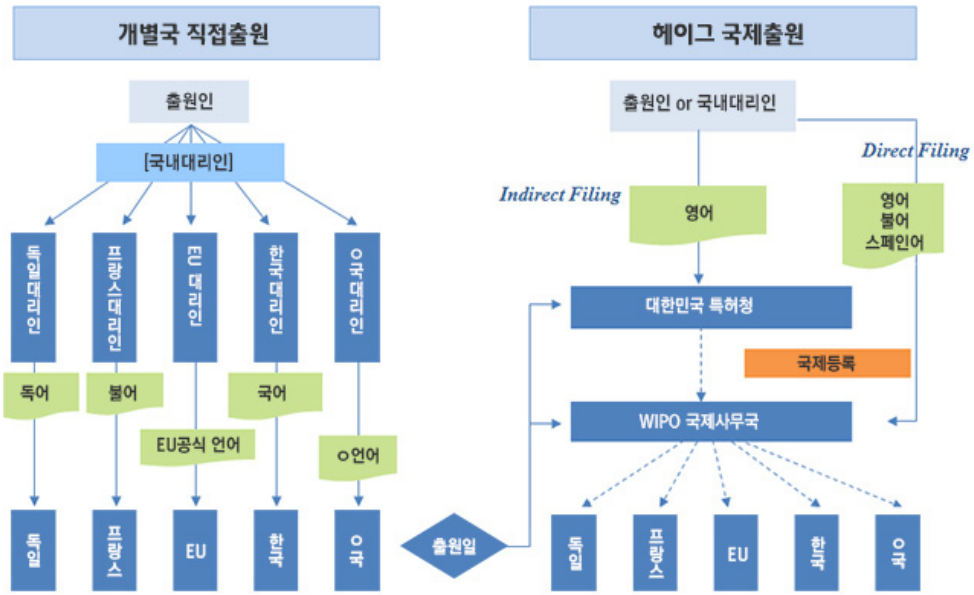
② 정부간 기구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국가 간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지식재산권 기구를 가진 국가인 경우 이들 기구에 출원하는 방법으로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와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BOIP),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가 있음

③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원하는 방법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
헤이그 시스템의 특징은 국가 간 공동지식재산권기구인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도 헤이그협정의 당사자로 가입함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의 비교



▣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 개요

① 헤이그시스템의 이용자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협정은 헤이그 출원은 위한 자격을 가진다고 표현함(Article 3)

첫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둘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를 가지거나

셋째,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

다만, 1999년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자의 거주지를 기초로 국제출원을 할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자이므로 위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이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음

② 국제출원의 언어

국제출원서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를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청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국제출원서의 등의 작성에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③ 국제출원서 제출 방법

ⅰ) WIPO의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출원인이 WIPO에 국제출원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

WIPO에 제출할 때는 WIPO에서 제공하는 E-filing Portfolio Manager를 이용하거나 서면출원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E-Filing Portfolio Manager는 WIPO에 출원을 위한 사용자 계정을 만든 이후 사용할 수 있음

ⅱ)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한 출원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를 영어로만 작성할 수 있으며 국내법에 정한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국제출원은 다음 2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함

첫째, 특허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특허청 수수료 또는 대리인의 위임장 등 형식요건의 미비로 인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정이 이루어져야 함

둘째, 국내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국제출원 수수료(기본료, 공개료, 지정수수료)는 국제사무국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④ WIPO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면 협정 등에서 정한 형식요건을 따르고 있는지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제등록 또는 하자통지의 대상이 되며, 국제사무국은 오직 형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신규성 또는 다른 실체적 요건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하지 못함

⑤ 국제등록 및 국제등록의 공개

형식요건을 만족하는 국제출원은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공개연기가 신청된 출원이 아니라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며, 이러한 공개는 WIPO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도면 등 국제등록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함

⑥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ⅰ) 국제등록에 대한 심사

국제등록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면 각 관청은 자국 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청은 그 국제등록에 대한 보호거절 여부를 WIPO에 통지할 수 있음

다만, 관청은 국제등록의 형식요건에 관한 이유로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할 수 없음

ii) 심사결과의 통지

일반적으로 보호거절 여부는 국제등록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되어야 하나, 체약당사자 관청은 6개월의 거절통지기간을 12개월의 거절통지기간으로 대체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각 관청의 거절통지 기간은 WIPO 홈페이지 참조)

iii) 거절통지에 대한 대응

거절통지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관청에 직접 출원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가지고, 권리자가 거절을 다투는 경우 후속절차는 그 국내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불복청구 등은 해당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정한 조건과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iv) 보호부여기술서(또는 등록결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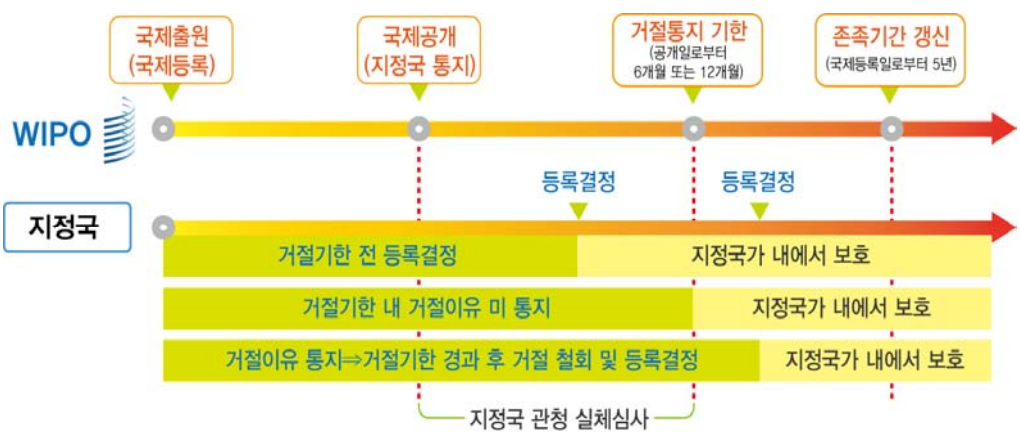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결과에 따라 관청은 보호가 부여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WIPO에 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관청이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절통지 기간 이내에 보호거절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은 당연히 보호됨

v) 보호의 존속기간

국제등록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함(총 15년의 보호기간)

다만,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횟수의 갱신도 가능하며 각 체약당사자의 최장 보호기간은 국제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의 주요 기간별 절차



▣ 참고사항

① 국제출원의 하자

국제출원이 WIPO 접수 당시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WIPO는 하자통지서를 발송하고 3개월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권고하며, 일부 하자는 국제출원일의 연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하자이므로 이러한 하자통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하자보정서의 제출은 WIPO에서 직접 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하자를 치유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수수료는 기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반환함

② 선언사항의 확인

헤이그시스템은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가 공개연기, 디자인의 단일성, 출원인에 대한 특별요건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선언을 할 수 있으므로, 국제출원을 통하여 특정한 체약당사자를 지정하려는 출원인은 해당 체약당사자가 행한 선언을 확인하고 국제출원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개별 체약당사자가 행한 선언의 내용은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③ 국제등록의 변경

국제출원 이외의 소유권 변경, 권리자의 이름 및 주소 변경 등 각종 변경 신청서는 관청을 통하여 제출할 수 없고 권리자가 WIPO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④ 국제등록의 갱신

국제등록은 최초 5년간 효력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5년의 기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신청서(DM/4)를 WIPO에 직접 제출하고 갱신수수료늘 납부 하여야 함

⑤ 체약당사자(가입국) 현황

우리나라가 가입한 99년 개정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는 2016. 8. 현재 50개임

▣ 용어해설

① 국제등록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으로 실행된 디자인의 국제등록을 말하며, 국제등록이 지정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체약당사자 관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등록은 아님

② **체약당사자**

헤이그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

③ **국제분류**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라 정해진 분류로 로카르노 분류의 최신판은 2014년 제정된 10판이며 32류, 219군, 7,024개의 물품 목록을 포함

④ **보호거절**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은 그 영역 내에서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할 권리가 있고, 거절통지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지정관청의 심사 결과 나타난 거절이유를 기재하여 거절을 통지하는 것을 말함

⑤ **보호부여기술서**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국제사무국에 보내는 통지서

⑥ **수리관청**

헤이그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관청(특허청)

⑦ **지정국관청**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출원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관청

⑧ **국제사무국**

국제등록, 국제공개 등 헤이그 절차 업무를 담당하는 WIPO의 소속 기관

▣ 헤이그 관련 사이트

- 특허청 헤이그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 지식재신제도 > 해외 디자인 출원
- WIPO 헤이그 홈페이지 : http://www.wipo.int/hague/en/
- WIPO 전자출원(E-filing Portfolio Manager) : http://www.wipo.int/hague/en/ - E-Filing Portfolio Manager
- 국제 등록부 조회 : http://www.wipo.int/designdb/hague/en/

- 국제 공보 조회 : http://www.wipo.int/haguebulletin/?locale=en
- 국제출원 수수료 계산 : http://www.wipo.int/hague/en/fees/calculator.jsp
- 로카르노 분류 영문 검색 :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nivilo/locarno10/index.htm?lang=EN
- 로카르노 분류 한글 검색 : http://www.kipo.go.kr/ > 지식재신제도 > 분류코드조회 > 디자인분류코드

06

| 출원 따라하기 |

출원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 1544-8080
- 특허청 출원과(국내출원) ☎ 042)481-5414
- 특허청 국제출원과(PCT·마드리드·헤이그) ☎ 042)481-5208, 5279


특허청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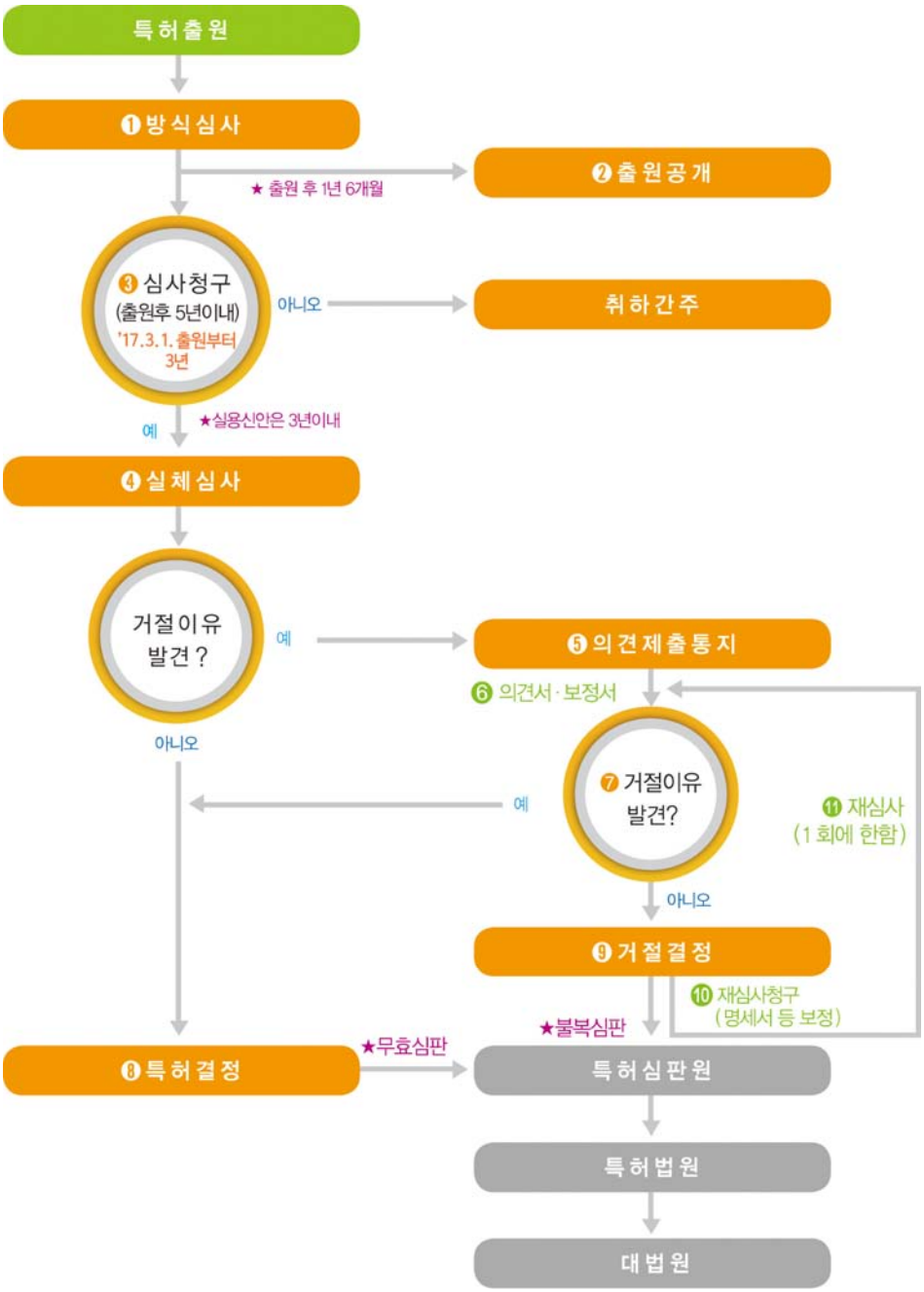
Ⅲ. 심사 알아보기

1. 특허·실용신안 심사 절차
2. 디자인 심사 절차 및 특유의 제도
3. 상표 심사 절차 및 제도
4. 맞춤형 심사제도 운영

01

| 심사 알아보기 |

특허·실용신안 심사 절차



① 방식심사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다.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통산하여 4월임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특허출원 등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② 출원공개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출원을 제외하고 계속 중인 모든 특허출원은 출원일(조약우선권* 이나 국내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그 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보에 공개된다.

조약 우선권주장(특허법 제54조, 실용신안법 제11조)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는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파리협약에 의한 동맹국, TRIPS 협정에 의한 회원국 및 양자 간 조약에 의한 조약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 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우선권주장 절차
우리나라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 시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출원 국가(제1국)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 우선권주장(특허법 제55조, 실용신안법 제11조)

-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에 대하여 통상의 출원절차로 출원할 경우 자신의 선출원과 동일발명으로 거절되게 되거나 또는 선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이들 발명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신규사항 추가 등에 의하여 거절결정 될 수 있다. 국내 우선권주장 제도는 이와 같은 경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선출원일에, 추가된 발명은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출원공개제도 ›››

심사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출원내용을 사회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제도

- 공개의 효과
 - 서면 경고 가능, 보상금청구권 발생
- 출원인은 출원공개(외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특허출원은 국내 서면제출, 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특허출원은 국제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가능
-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때부터 특허권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동안 실시한 것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발생
- 다만, 보상금 청구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 행사 가능



※ 정보 제출

출원공개 전에도 출원 계속중이면 누구든지 해당발명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음

※ 상표법의 손실보상청구권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에는 출원인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출원공고 전에도 상표등록 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한 경우에는 가능)

③ 심사청구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심사한다.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2017. 3. 1. 부터 3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이다.

심사청구제도 〉〉〉

- 심사청구제도는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 등이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대하여만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제도
- 심사청구는 취하가 안되며 일정 기간 내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함

특 허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2017.3.1.이후 출원은 3년 이내)
실 용 신 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디자인 · 상표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④ 실체심사

심사착수는 심사청구 접수순서대로 하며, 특허법 제6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되어야 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 심사청구일 기준 평균 약 11.0개월 후에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2015년 평균), 이는 미국(18.4개월, 2015년기준), 일본(9.6개월, 2014년기준)과 비교해도 빠른 수준임

⑤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6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결정에 앞서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통계에 따르면 심사 건의 90% 정도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출원 대비 최종 등록결정률은 약 63.0%로 나타나고 있음 (2015년 평균)

※ 특허, 실용신안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
-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지정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 연장(2월+2월)할 수 있고, 추가로 더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함

⑥ 의견서/보정서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정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⑦ 심사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의견서를 반영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한다. 만약,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도 같이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서에 의한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다.

⑧ 특허결정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한다.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직권 보정된 사항은 특허결정등본과 같이 출원인에게 통지된다. 출원인은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직권보정 ›››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직권 보정된 사항은 특허결정등본과 같이 출원인에게 통지된다. 출원인은 설정 등록을 위한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⑨ 거절결정

심사관은 의견서 및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도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적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한다.

※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⑩ 보정/재심사청구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법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때까지)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에 따라 다시 거절결정되었거나 거절결정에 관한 불복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재심사청구에 의해 거절결정은 취소 간주된다.

⑪ 재심사

재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그 전에 했던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통상의 출원심사와 같이 보정서를 반영하여 다시 심사한다.

재심사청구 요건 〉〉〉

① 특허거절결정된 출원일 것

- 무효, 취하된 출원은 재심사 대상이 아님
-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단,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심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제외). 다시 재심사 청구 시 반려함

②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없을 것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는 반려대상임

③ 명세서 등의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청구할 것

- 명세서 등 보정서에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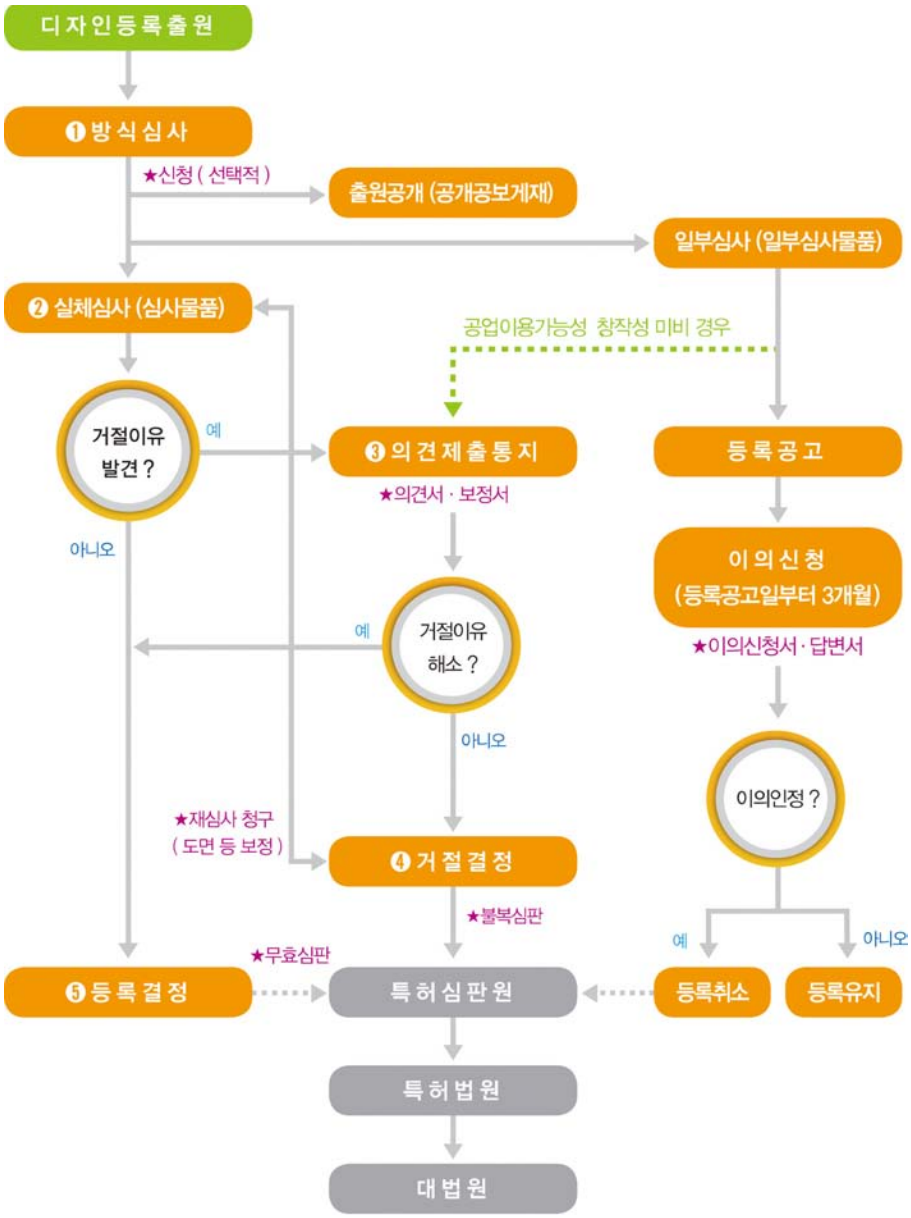


02

| 심사 알아보기 |

디자인 심사 절차 및 특유의 제도

1. 흐름도



① 방식심사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다.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통산하여 4월임(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특허출원 등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② 실체심사

심사착수는 출원순서대로 하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지금 출원된 건은 평균 약 5개월 소요(2016. 3. 기준)

※ 출원의 실제 심사 진행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

③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거절이유 발견 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심사가 계속될 수 있다.

- 통계에 따르면 심사 건의 51% 정도가 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디자인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

- 디자인과 관련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4회(매회 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 연장 가능(2개월씩 일괄신청 가능)

※ 상표디자인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제2항

④ 거절결정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한다.

※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음

⑤ 등록결정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하며,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설정등록하고 등록공고한다.

▣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

직물지, 포장지 및 의복 등과 같이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기본요건과 공업상 이용가능성, 창작성 여부만을 심사(선행 디자인 조사는 하지 않음)하여 등록시킴으로써 조기에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제도

※ 디자인일부심사분류: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 직물류), 19류(문장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등)

①-1 일부심사 출원에 대한 기본요건 심사

- 출원서가 접수되면 방식심사 후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공업상 이용가능성 및 용이 창작 여부를 심사한다.

②-1 일부심사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며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 일부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관 3인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한다.

2.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① 관련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 기본디자인권이 무효된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은 별도로 존속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자에게 동일자에 신청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본디자인과 도일
-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시기 제한: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

②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둘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한 벌의 다기 세트, 한 벌의 응접세트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5〕참조)

③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 출원시부터 최초 등록료 납부일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 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1개의 출원서에 1개의 디자인을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에 출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제도

⑤ 부분디자인제도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 부분, 안경테의 귀걸이부분 등)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⑥ 글자체디자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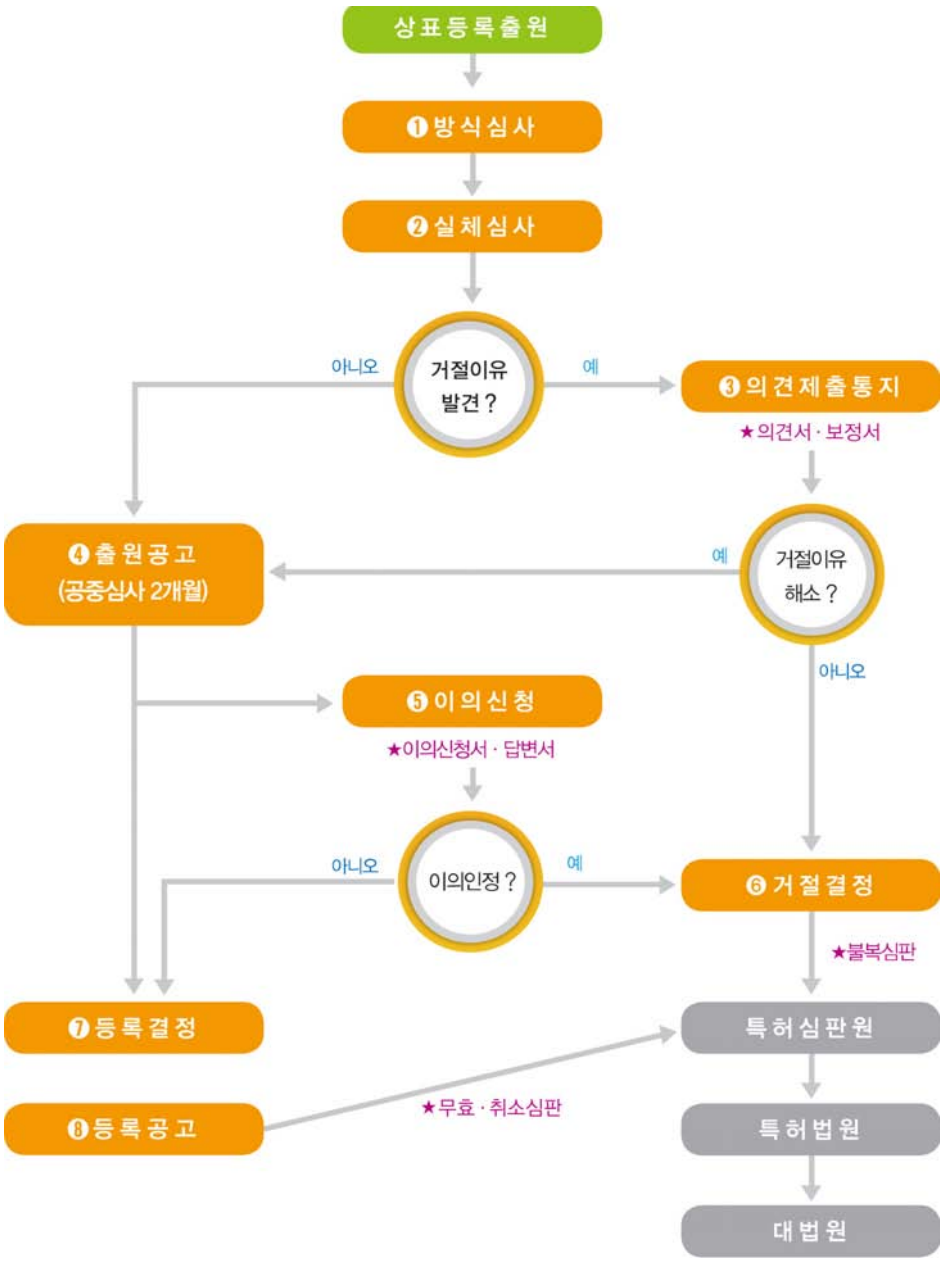
글자체[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도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03

| 심사 알아보기 |

상표 심사 절차 및 제도

1. 흐름도



① 방식심사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다.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통산하여 4월임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특허출원 등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② 실체심사

심사는 출원순서대로 하며 지정상품이 속한 분류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지금 출원된 건은 평균 약 5개월이 소요

※ 출원의 실제 심사 진행사항은 특허청 전자출원 홈페이지 '특허로'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음

③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거절이유 발견 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제출기회를 부여하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심사가 계속될 수 있다.

※ 상표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
- 상표와 관련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4회(매회 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 연장 가능(2개월씩 일괄신청 가능)

④ 출원공고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없거나, 의견서 등을 통해서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출원공고한다.

※ 출원공고제도는 상표법 제57조에 따라 출원상표를 최종 등록 결정하기 전에 일반인에게 공고(2개월간)하여 이의신청기회를 주는 제도임(공중심사)

⑤ 이의신청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의견을 들어 이의신청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⑥ 거절결정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한다.

※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음

⑦ 등록결정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을 한다.

⑧ 등록공고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이 되면 상표등록공고를 한다.

▣ 상표의 등록요건

■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표장이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제33조), 상표 부등록 사유(제34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식별력이 없는 상표(제33조)

구 분	사 례
보통 상표	불소치약(치약), 호두과자(과자류), 호마이카(가구류), 초코파이(과자류), JEEP(승용차) 등
관용 표장	정종(청주), ~TEX(직물류), ~깡(스낵류), NAPOLEON(코냑), NET(통신업), LON(섬유류)
성질 표시	• 산지 : 초당(두부), 금산(인삼), 이동갈비(소고기등) 등 • 품질 : SUPER, 순정 • 원재료 : SILK(블라우스) • 효능 : 강력(본드), Flex Control(전기면도기) • 용도 : KICKERS(축구화) • 기타 : 형상, 수량, 가격, 사용방법, 가공방법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	종로학원, 한강모피, 장충동왕족발, CORIAN, JAVA, 프랑세스 베이커리 등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LEE, 윤씨농방, PRESIDENT, Best Company 등
간단하고 흔한 표장	3M, 9V, BETA, E- PRINT(프린팅프레스),  등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MR. 토스트, 이게 웬떡이냐, DRINK IN THE SUN, it's MAGIC 잇스매직 등

주요 상표 부등록 사유(제34조)

34-1-1 : 국기 등 공공기관의 감독·증명용 인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34-1-2 :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34-1-3 : 국가 · 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 · 유사한 상표
34-1-4 :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34-1-6 : 저명한 타인의 성명·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
34-1-7 :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34-1-11 : 저명상품이나 저명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34-1-12 :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
34-1-14 :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

2.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① 비전형상표제도

입체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동작상표, 소리·냄새상표 등을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② 다류 1출원제도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가지 류 이상일 경우에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1 출원서로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출원절차가 단순해 짐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제도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등록받을 수 있음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제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명표장을 말함

04

| 심사 알아보기 |

맞춤형 심사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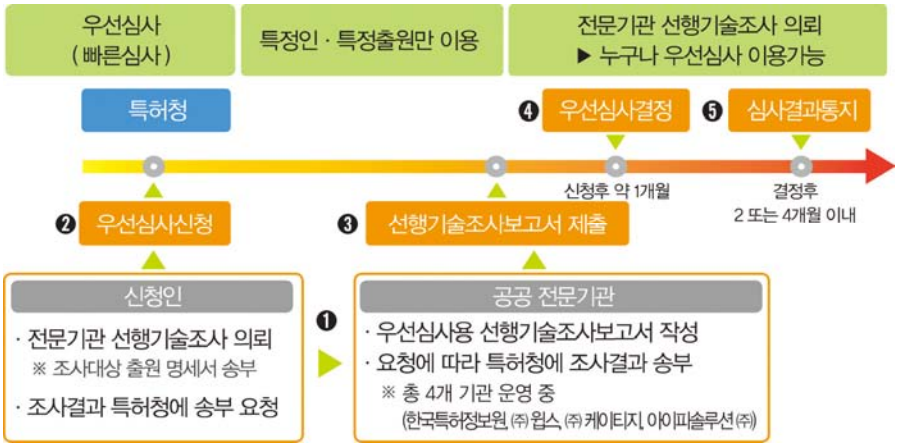
1.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빠른 심사, 일반 심사, 늦은 심사'의 세 가지 심사 중 하나를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① 빠른 심사

기존 우선심사 및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하면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확대



② 늦은 심사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 (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 신청 시기 및 절차 등 : 심사청구 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 늦은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출원인의 희망에 따라 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③ 일반심사

심사청구 후 평균 11.0개월 이내('15년 하반기 기준)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음

2.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제도(특허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

① 우선심사제도란?

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② 처리기간

우선심사 신청 건은 우선심사 신청서 접수부터 우선심사여부결정 및 심사착수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한 우선심사신청출원 또는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은 5개월) 소요됨

다만,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에 보완사항이 있거나, 기타 보정요구가 되는 등 절차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 기간만큼 심사결과가 늦게 제공됨

③ 신청대상

-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5조)



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공통 : 10개 분야

1.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지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단,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과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실용신안 등록)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8.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고안,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10.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와 출원된 발명(고안)에 관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나. 특허출원 : 4개 분야

1.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디자인등록 출원도 해당됨)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 8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관련된 특허출원
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는 입주 의료연구개발 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출원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특허/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다. 실용신안등록출원 : 2개 분야

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출원(단, 특허·실용신안만 해당)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특허/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라. 디자인등록출원 : 1개 분야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출원

3. 상표 우선심사제도(상표법 제53조)

① 정의

원칙적으로 상표심사는 출원순서에 의하나(상표법 제53조제2항), 권리관계의 확정이 조속히 필요한 경우 상표출원 순서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② 처리기간

우선심사 신청 시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을경우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1차 심사가 이루어짐

③ 신청대상(상표법 시행령 제12조)

-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을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 상표등록출원인이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해당 경고와 관련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한정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낸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표등록출원인이 타인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과 관련한 경고를 한 경우 해당 경고와 관련이 있는 상표등록출원
- 타인의 먼저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 인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 법 제167조제1호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외국 특허청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정한다)
-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 동일인이고, 표장 및 지정상품이 전부 동일한 경우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Ⅳ. 등록 신청하기

1.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2. 기본 등록 업무
3. 변동 등록 업무
4. 등록보정제도
5. 등록 관련 문의

01

| 등록 신청하기 |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등 특허권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의 총칭

※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한 공적장부를 등록원부라 하고,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는 것이 인정된 사항을 등록사항이라 함



02 | 등록 신청하기 |

기본 등록 업무

1. 신규설정 등록

① 정의

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가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해 등록결정(또는 심결)이 된 경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

② 구비서류

-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등록료) 1부
 - 등록료가 면제인 경우에도 신규설정을 위해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식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우측 하단 → '민원서식 다운로드' 코너에서 납부서 조회 후 다운로드
- 감면·면제사항 증빙서류(감면·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함)
 - 납부서에 감면·면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③ 납부방법

-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우체국은 납입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자번호만으로 납부가능
 ※ 납입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특허관리 → 특허보관함에서 재발급 가능
- 인터넷에서 납부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에서 카드납부 또는 지로납부 가능
- 납부서 제출을 통한 신규설정 등록료 납부
 - 우편 :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납부서(서식번호 제25호)를 출력·작성하여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발행)와 함께 우편발송
 - 방문 :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납부서 및 설정등록료 은행창구에서 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설치된 PC 이용) 가능
 - 온라인 : 특허로 사이트(http://www.patent.go.kr)에서 서식작성기를 통해 납부서 제출 후 설정등록료 납부

④ 납부기간(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등록)료 납부하여야 함

※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등록)료를 추가납부 할 수 있음
(단, 월마다 3%씩 가산율이 적용됨. 1개월-3%, 2개월-6%, 3개월-9%, 4개월-12%, 5개월-15%, 6개월-18%)

예시) 설정등록료 납부기간



■ 상표

상표등록료(지정상품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 납부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

※ 상표 등록은 추가 납부 기간이 없음

※ 상표 설정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분할납부제도 ›››

■ 상표권 2회 분할 납부제도가 도입(2010.7.28시행)되면서 민원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10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5년분을 2회에 걸쳐 납부도록 제도화

ⅰ) 납부서의 '납부회차' 항목에 '1회차'라고 기재한 후, 1개류마다 132,000원씩의 설정등록료와 1개류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개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개마다 1,000원씩의 가산료를 기재, 등록세는 1회차에만 납부하므로 1회 차 납부 시에는 등록세 9,120원을 납부서에 함께 기재

ⅱ) 1회차 납부 후 2회차 등록료 납부가능 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말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납부 가능하고 만약,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권 소멸

ⅲ) 만약, 2회차 설정등록료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지 않고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서의 '납부대상의 표시' 항목에 출원번호가 아닌 '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납부회차'를 '2회차'로 기재,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상기 ⅱ) 의 절차와 동일

2. 연차등록료 납부

① 정의

특허, 실용신안(1999. 6. 30. 이전 및 2006. 10. 1. 이후 출원), 디자인의 설정등록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

※ 존속기간(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내에서 최초설정등록(3년분) 이후 매년 권리 유지 여부를 권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② 구비서류

- 납부서(구분항목 : 연차등록료) 1부
 - ※ 서식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우측 하단 → '민원서식 다운로드' 코너에서 납부서 조회 후 다운로드
 -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 첨부된 수납 의뢰서를 통해서 납부서 없이 등록료 납부 가능
- 감면·면제사항 증빙서류(감면·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함)
 - 납부서에 감면·면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③ 납부방법

-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 첨부된 수납의뢰서와 함께 은행, 우체국에 직접납부
 - ※ 우체국은 수납의뢰서가 없어도 납부자번호만으로 납부가능
 -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특허로 → 특허관리 → 특허보관함에서 재발급 가능
- 인터넷에서 납부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수수료관리에서 카드납부 또는 지로납부 가능
- 납부서 제출을 통한 연차등록료 납부
 - 우편 :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납부서(서식번호 제25호)를 출력·작성하여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발행)와 함께 우편발송
 - 방문 :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납부서 및 연차등록료 은행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설치된 PC 이용) 가능
 - 온라인 : 특허로 사이트(http://www.patent.go.kr)에서 서식작성기를 통해 납부서 제출 후 연차등록료 납부

④ 납부기간

등록료가 납부되어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에 다음 년도의 특허료를 미리 납부

※ 납부기간 경과 후 추납기간(6개월) / 회복기간(3개월)

예시) 4년차 연차 등록료 납부기간(특허·실용신안·디자인)

- 연차등록료의 납부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4년차가 시작하기 전날까지
-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등록)료를 추가납부 할 수 있음
 (단, 1개월 이내에 3%, 2개월 이내 6%, 3개월 이내 9%, 4개월 이내 12%, 5개월 이내 15%, 6개월 이내 18% 가산된 금액을 납부)
-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이 정상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봄(특허법 제81조)



3. 상표 존속기간 갱신 등록

① 정의

상표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하기 위한 등록

※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권의 갱신 제도 변경 (2010. 7. 28.) :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② 신청·납부기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신청서 제출일 다음날까지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

※ 이 기간 내에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가능

등록료 보전제도 ›››

특허 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존속기간 갱신 등록) 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

단, 보전에 의하여 특허료를 완납하는 시점이 당초의 납부기간(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포함)을 경과한 경우에 그 보전은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소멸권리회복제도(특허·실용·디자인) ›››

특허(등록)료 추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한 경우 실시중인 권리에 한하여 추가 납부기간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권리회복을 신청하고 정상특허(등록)료의 2배를 납부하면 소멸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제도

03 | 등록 신청하기 |

변동 등록 업무

1. 권리 이전 등록

① 정의

- 특허권 등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음
- 특허권 등의 이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를 특허청에 등록해야 함

※ 다만, 상속과 같은 일반승계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청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② 주요 등록원인별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구분	주요 등록원인 및 첨부서류	
		등록원인	첨 부 서 류
권리 이전 등록	[대상권리]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신청구분]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양도	① 양도계약서 ②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속	①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 ② 피상속인(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상속포기심판서정본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①,②,③ : 등록원인 상속과 동일 ④ 협의분할서(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성립)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법인 합병	① 피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분할	① 분할 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분할 후 신설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분할계획서 (공증된 계획서) - 공증된 계획서가 사본인 경우 공증 ④ 권리승계확인서
		법률규정	① 조직 통 · 폐합 등의 근거가 된 법률

공통사항	①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의서 ③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서 등 ④ 판결에 의한 경우는 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원 ⑤ 외국인에 의한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국적증명서, 공증서류 등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본

2. 실시(사용)권 설정

① 정의

-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전용실시권(사용권)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음

통상실시권(사용권)

-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써,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없음

② 구비서류

-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예시 ; 설정계약서 또는 사용허락서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1통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변리사가 대리할 경우) 1통 (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말소등록

① 정의

말소등록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기타 이들의 권리에 설정된 실시(사용)권,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 사망, 계약해제, 명의인의 승낙, 판결 등의 원인으로 말소시키는 것

② 구비서류

- 말소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포기서 등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법인은 법인증명서) 1통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 6월 이내)
 -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작성 후 6월 이내) 1통
- 위임장(변리사가 대리할 경우) 1통(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4. (근)질권 설정

① 정의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시기나 조건이 불명확하고 최고의 한도액만을 정해놓은 경우)한 채권을 담보로 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함

질권이란?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설명] KIKI가 친구인 POPO에게 돈을 일천만원 빌렸는데 KIKI가 당장 돈을 상환(변제)하지 못할 경우 KIKI가 가지고 있는 일천만원 상당의 보석을 POPO가 보관하면서 돈을 갚을 경우 보석을 주기로 계약하는 경우를 질권 설정에 비유할 수 있다. 만약 KIKI가 채무를 변제하는 않는다면 POPO는 합법적으로 그 보석을 처분해서 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 특허권자(질권설정자) : KIKI　　질권자 : POPO　　특허권 : 보석

② 구비서류

- 질권설정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 질권설정계약서)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법인은 법인증명서) 1통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 6월 이내)
 -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작성 후 6월 이내) 1통
- 위임장(변리사가 대리할 경우) 1통(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유질특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자의 처분승낙서

변동등록시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구 분		공유자	특허권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질권자
특허권자	이전	○		×	×	×
	질권설정	○		×	×	×
	전용실시(사용)권 설정	○		×	×	×
	통상실시(사용)권 허락	○		×	×	×
	포기	×		○	○	○
전용실시권자	이전	○	○		×	×
	질권설정	○	○		×	×
	통상실시(사용)권 설정	○	○		×	×
	포기	×	×		○	○
통상실시권자	이전	○	○	○		×
	질권설정	○	○	○		×
	포기	×	×	×		○

| 등록 신청하기 |

04 등록보정제도

1.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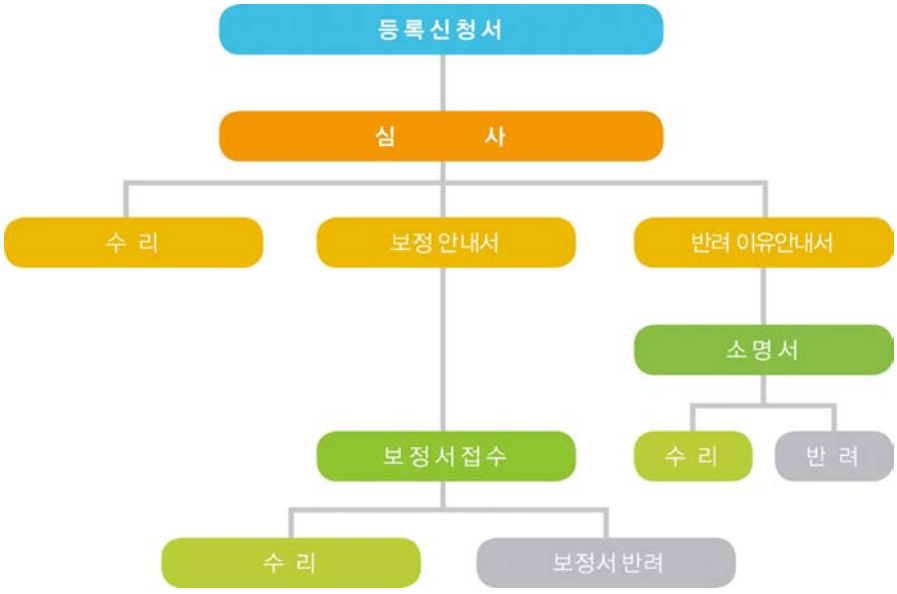
보정이란 절차적 사항에 관한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정기간이내 신청인이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 절차

2. 도입 배경

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경미한 흠결로 인해 신청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2. 7. 1.일자로 등록보정제도를 도입·시행중

3. 주요 내용

▣ 절차 흐름도



담당자 • 흠결 있는 서류 발견 시, 당해 흠결이 치유 불가능한 흠결(§29②)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정기회를 부여(보정안내서 발송)

신청인 • 보정안내서 발송일(발송주의)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 보정서를 제출. 보정서로 흠결이 치유될 경우 즉시 수리

담당자 • 치유불가능함 흠결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이유안내서를 발송. 반려처분에 대해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통해 의견 제출 가능

▣ 주요 내용

■ 등록보정서의 기능

(신청서 수정)

신청인의 주소, 출원인코드, 등록원인, 실시권의 내용 등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 가능

(첨부서류의 제출)

계약서, 판결문, 위임장 등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들을 다시 제출가능

(등록 수수료의 납부)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 가능

■ 등록보정 방법

서식 • 등록보정서(특허권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를 통해 제출. 신청서 수정은 등록보정서에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하고 제출서류는 등록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

기간 • 등록보정서는 보정안내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특허청에 도달하여 접수되어야 함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인 경우, 2개월

기타 • 보정기간 이내에는 보정횟수의 제한은 없음

보정료 • 없음

05

| 등록 신청하기 |

등록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전국 어디서나)
- 특허청 등록과 ☎ 042)481-5247

등록신청시 주요 흠결 사유 〉〉〉

- 신규설정등록
 - 설정 등록료 미납, 등록료 부족 납부(보전기간 경과 후 불수리)
 - 출원번호 오기재
 - 출원인과 등록료 납부서상의 등록권리자가 다른 경우 등

- 변동등록
 - 등록의무자 주소 등이 등록원부와 달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재하는 경우

- 연차등록료 납부
 - 납부기간 경과
 - 납부연차 및 등록번호 오기재
 - 연차등록료 중복납부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Ⅴ. 심판절차 밟기

1. 특허심판이란?
2. 특허심판의 종류
3. 특허심판 이용안내
4.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5. 특허심판 기간연장 관련 절차

Tip

▣ 특허분쟁의 첫걸음, 경고장 바로 알기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

1. 실시제품이 특허출원/특허발명과 동일함
2. 특허등록 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지급해야 함
3. 계속 침해 시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해야 함
 ※ 공개/등록 공보, 등록원부 첨부

경고장 발송 전 주의사항

1. 경고장 발송 전, 충분한 증거수집
2. 특허침해가 아님에도 침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경고장의 내용 중 확인해야 할 사항

1. 등록원부를 통해 특허권의 유효여부 확인
2. 청구범위에 실시제품이 포함되는지 판단
3.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동일한 발명이 공지되었는지 확인

경고장 검토 후 조치 사항

1. 청구범위에 실시제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확인 가능
2.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특허(상표)침해분쟁 바로 알기

침해가 의심될 때 권리자의 대응방법

1. 침해한 실시자에게 주로 내용증명으로 경고장 발송
2.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
3. 손해배상소송 등을 법원에 청구
4. 고의침해시 형사 침해죄로 검찰, 경찰에 고소
5.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경고장을 받았을 때 실시자의 대응방법

1.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
2.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
3. 특허(상표)권불침해 확인의 소를 법원에 청구
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침해분쟁 관련 소송의 종류

1. 손해배상
2. 특허(상표)권침해금지
3.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행위금지
4. 신용회복 등

침해분쟁 관련 심판의 종류

1.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3. 무효심판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기본 판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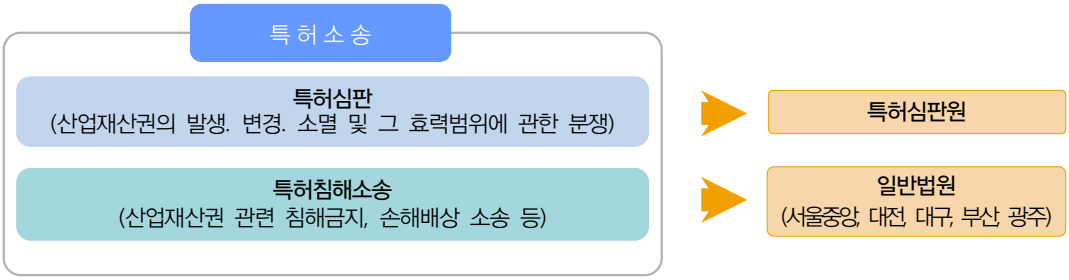
01

| 심판절차 밟기 |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의 거절,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확인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

(※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담당)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고등법원급 전문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 특허소송 제기기간

- 특허법원 :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대 법 원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02 | 심판절차 밟기 |

특허심판의 종류

1. 결정계 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이 불복한 경우에 그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

심판의 종류	내용	청구기간	관련규정
거절결정 불복심판	출원에 대한 특허(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특허법 제132조의3,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상표법 제116조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디자인, 상표) ※ 특허·실용신안은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폐지	보정이 요지변경이라는 이유로 심사관이 보정을 각하 결정하였을 경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정정심판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이후 권리자 스스로 자기의 특허발명/등록고안의 명세서/도면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설정등록 후 청구가능(소멸 후에도 가능, 심결에 의해 무효가 된 이후에는 불가)	특허법 제13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2. 당사자계 심판

이미 등록된 권리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심판의 종류	내용	청구기간	관련규정
무효심판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에서 정한 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	권리 존속기간 중 또는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	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상표법 제117조
정정의 무효심판	특허발명/등록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무효심판 절차에서의 정정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이 부적합한 경우에 그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판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	특허법 제13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	권리 존속기간 중 또는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	특허법 제134조, 실용신안법 제31조의2
상표등록 취소심판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상표권에, (불사용, 부정사용 등) 취소사유 발생 시 그 상표권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심판	해당 취소사유의 소멸일로 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표법 제119조, 제120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자 ·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특허발명 등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	권리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가능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상표법 제121조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특허발명 등이 선행 타 특허권 등과 이용/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 허락을 구하는 심판	권리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가능 (현존 권리간의 실시 저촉해결 목적)	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디자인보호법 제123조

03 | 심판절차 밟기 |

특허심판 이용안내

1. 심판청구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심판서류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취지】 작성 시 유의사항

■ 출원(등록)대상 청구의 취지 기재 시 권리구분과 출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단체표장등록 제43-00호의 등록을 취소한다."(O)
"상표등록 제43-00호의 등록을 취소한다."(X)
"단체표장등록 제40-00호의 등록을 취소한다."(X)

■ 결정계 심판

- 청구대상은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 전체이어야 하며, 출원 중 일부 청구항(일부 지정상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원결정을 취소한다. 2016년 특허출원 제00호는 등록결정한다." (O)
"원결정을 취소한다. 2016년 특허출원 제00호의 청구항 제1항을 등록결정한다." (X)

■ 당사자계 심판

- 청구대상은 ① 전체 청구항 또는 일부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고, ② 【청구의 취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지정상품)의 개수와 【청구의 이유】상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지정상품)의 개수는 동일해야 합니다.

■ 심판종류에 따른 청구의 취지 작성예시

구 분		작성예시
결정계	거절결정 불복심판	"원결정을 취소한다. 2016년 특허(상표)출원 제00호는 특허(등록)결정한다"
	정정심판	"특허 제00호의 명세서(도면)를 청구서에 첨부한 명세서(도면)와 같이 정정한다.

구 분		작성예시
당사자계	권리범위 확인심판	■ 적극적 - "확인대상발명 ○○은 특허 제00호 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일부) - "확인대상발명 ○○은 특허 제00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전체). ■ 소극적 -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등록 제00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무효심판	"특허 제00호의 청구범위 제1항, 제2항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일부) "특허 제00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전체)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등록 제00호의 제00류 지정상품 중에서 △△, .○○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다."(일부) "상표등록 제00호의 제00류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다."(일부) "상표등록 제00호의 등록을 취소한다."(전체)

2.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의 이용



■ 심판청구서를 비롯한 심판서류를 특허심판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받아볼 수 있음

■ 심판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특허로(www. patent. go. kr)에 접속하여 사전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전자출원S/W(KEAPS : 서식작성기 등)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접수할 수 있음

※ 이전에 온라인 출원한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 필요 없음

■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간

평일·토요일·주중공휴일	00:00 ~ 24:00
일요일	09:00 ~ 21:00

※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44-8080으로 문의바람.

3. 신속·우선심판

심판사건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관련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종결하는 제도

구분	신속심판	우선심판
처리기간	통상 3개월	통상 6개월
도입시기	'09. 7. 1	'98. 3. 1
근거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제1항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1항
대상	•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 또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사건 •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나 (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사건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사건 •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청구한 최초의 정정심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심판 •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당사자계 심판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 •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해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사건 •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 심판사건 •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 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 •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 국제간 지재권 분쟁이 야기된 사건 •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 관련사건

| 심판절차 밟기 |

04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1. 결정계 심판 절차도

※ 심사전치제도(2009.6.30. 이전 출원)는 특허·실용 신안·디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한함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2009년 7월 1일 시행) 〉〉〉

- 심사전치제도 하에서는 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거절결정 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 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출원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음

2. 당사자계 심판 절차도



05 | 심판절차 밟기 |

특허심판 기간연장 관련 절차

1. 지정기간연장 및 기일변경 신청

지정된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술심리 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2.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 법정기간연장신청은?

- 거절결정서 등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을 1회 30일에 한하여(제외자에 한해 1회 30일 추가 연장 가능) 연장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정기간연장신청은?

- 심판절차를 밟고 있는 심판당사자(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가 서류의 제출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가기간지정신청은?

-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 특허법원에 대한 소제기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연장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1) 법정기간연장신청서(재심청구 or 불복심판청구 목적)는 반드시 특허심판원에 제출해야함
 - 특허청으로 제출할 경우 법정기간연장신청서는 반려됨

2) 심판청구에 대한 최초 답변서 제출을 제외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승인 될 수 있음

3) 아래의 서류에 대하여 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연장신청서는 반려됨
 -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상표/디자인/기술 설명회개최통지서 등

4)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부가기간 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불변기간 (소제기 기간) 종료일 4일전까지는 특허심판원에 제출(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도달)해야 함
 - 부가기간의 지정이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특허법원에 대한 소제기 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있음

3. 심판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전국 어디서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042)481-5918



제2장 출원에서 등록까지

Ⅵ. 수수료 납부하기

1. 수수료 일람표
2. 기타 출원 관련 수수료
3. 기타 등록 관련 수수료
4. 기타 심판 관련 수수료
5. 각종 서류 등·초본 발급신청료 등
6. PCT 국제출원 수수료
7.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수수료
8.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9. 출원료 등의 감면안내
10. 수수료 납부요령 및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11.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도
12. 지식재산포인트(IP POINT) 제도

01

| 수수료 납부하기 |

수수료 일람표

(2016. 9. 1. 기준)

특 허

• 출 원 •

전 자	국 어 46,000원 외국어 73,000원
서 면	국 어 66,000원 + 가산료 외국어 93,000원 + 가산료

* 가산료 : 명세서·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심사청구 •

143,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44,000원

• 등 록 •

설정등록 (1~3년)		매년 15,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3,000원
연차등록	4~6년	매년 4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7~9년	매년 10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38,000원
	10~12년	매년 24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55,000원
	13~25년	매년 36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55,000원

실용신안

• 출 원 •

전 자	국 어 20,000원 외국어 32,000원
서 면	국 어 30,000원 + 가산료 외국어 42,000원 + 가산료

* 가산료 : 명세서·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심사청구 •

71,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9,000원

• 등 록 •

설정등록 (1~3년)		매년 12,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4,000원
연차등록	4~6년	매년 25,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9,000원
	7~9년	매년 6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4,000원
	10~12년	매년 16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20,000원
	13~15년	매년 24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20,000원

• 심 판 •

전자	거절·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	매건 15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보정각하	매건 200,000원
서면	거절·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	매건 17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보정각하	매건 220,000원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무효심판청구료 : 매건 11,000원 (특허 : 2006. 10. 1. 이후 설정등록된 경우 / 실용신안 : 2006. 10. 1. 이후 출원된 경우)
*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는 2001. 7. 1.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및 1999. 7. 1.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해 적용

디 자 인

• 출 원 •

전 자	심 사	1디자인마다 94,000원
	일부심사	1디자인마다 45,000원
서 면	심 사	1디자인마다 104,000원
	일부심사	1디자인마다 55,000원

• 등 록 •

설정등록 (1~3년)		심 사	매년1디자인마다 25,000원
		일부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25,000원
연차등록	4~6년	심 사	매년1디자인마다 35,000원
		일부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34,000원
	7~9년	심 사	매년1디자인마다 70,000원
		일부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34,000원
	10~12년	심 사	매년1디자인마다 140,000원
		일부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34,000원
	13~20년	심 사	매년1디자인마다 210,000원
		일부심사	매년1디자인마다 34,000원

• 심 판 •

전 자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1디자인마다 240,000원
	보정각하	매건 200,000원
서 면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1디자인마다 260,000원
	보정각하	매건 220,000원

상 표

• 출 원 •

전자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서면	1상품류 구분마다 72,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 지정상품가산금 : 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 등 록 •

설정등록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2회 분할납부시 :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3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존속기간갱신	• 정상납부 : 1상품류 구분마다 31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2회 분할납부시 :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174,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갱신추납 : 1상품류 구분마다 340,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 2회 분할납부시 :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213,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

• 심 판 •

전 자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
	보정각하	매건 200,000원
서 면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1상품류 구분마다 260,000원
	보정각하	매건 220,000원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전자) 매건 250,000원 / (서면) 매건 270,000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의 감면

※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1.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등록료

• 전액(100%)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만 6세이상~만19세 미만인 자, 군인 등
• 85% 감면	만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만 65세 이상인 자
• 70% 감면	개인, 소기업, 중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특허, 실용신안의 출원료·심사청구료만 해당)
• 30% 감면	중견기업

2. 4~9년분 특허료 및 등록료

• 30% 감면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 ※ 4~6년분 특허료 및 등록료 20% 추가감면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3.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료

• 70% 감면	개인, 소기업, 중기업	• 50% 감면	전담조직

02

| 수수료 납부하기 |

기타 출원관련수수료

1. 변경·분할 출원 수수료 등

★표는 면제·감면대상 수수료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 매건 300,000원

■ 변경출원료 ★

- 특허 ⇔ 실용신안 : 해당 권리의 신규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상표 ⇔ 서비스표 : 매건 전자 9,000원 / 서면 10,000원



■ 분할출원료 ★ : 해당 권리의 신규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 7. 1. 이후 출원)의 경우 아래의 금액을 적용
 ① 동일(심사 / 일부심사) 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전자 1디자인마다 10,000원 / 서면 20,000원
 ②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 전자 1디자인마다 59,000원 / 서면 69,000원
- 단, 다류지정상품등록출원 분할의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 우선권 주장 신청료 / 추가료 : 전자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 서면 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 재심사 청구료 : 특허 10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0,000원 / 실용신안 5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5,000원

■ 우선심사 신청료 : - 특허 200,000원
- 실용신안 100,000원
- 디자인 1디자인마다 70,000원
- 상표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

2. 보정료

■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도면·견본 등)보정서 제출 : 전자 매건 4,000원 / 서면 매건 14,000원

■ 외국어 특허·실용신안출원 오역정정료(외국어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 포함)

① 전자문서 제출 : 특허 71,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 실용신안 35,000원 + 청구범위1항마다 9,000원

② 서면 제출 : 특허 91,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 실용신안 45,000원 + 청구범위1항마다 9,000원

■ 디자인변경 보정료(2005. 7. 1. 이후 출원은 서지사항보정서로 작성)

- 단독⇔관련 동일(심사 / 일부심사)출원 보정은 상기 보정료와 동일
- 일부심사⇒심사변경보정★ : 전자 53,000원 / 서면 63,000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 : 전자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4,000원 / 서면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14,000원

■ 디자인 재심사 청구 보정료

- 동일(심사 / 일부심사) 출원 보정 : 전자 30,000원 / 서면 40,000원
- 일부심사 ⇒ 심사 변경 보정 : 전자 79,000원 / 서면 89,000원

■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 보정료 : 전자 매건 4,000원 / 서면 14,000원

- 단, ①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 전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전자문서 제출시 62,000원 가산, 서면 제출시 72,000원 가산
 ② 2012. 4. 1. 이후 출원부터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000원 가산

3. 기타 수수료

■ 보완료

-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 보완료 : 매건 10,000원
- 디자인출원 절차보완료 : 전자 4,000원 / 서면 14,000원

■ 출원인 변경 신고료
- 전자 매건 11,000원 / 서면 매건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 전자 매건 5,000원 / 서면 6,5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인 경우(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전자 매건 5,000원 / 서면 매건 6,500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법정(지정)기간 또는 기일연장 신청료
-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 외국어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 20,000원(1회 / 1개월에 한함)

■ 비밀디자인청구료 : 전자 1디자인마다 18,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20,000원

■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전자 1디자인마다 21,000원 / 서면 1디자인마다 24,000원

■ 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1상품류구분마다 50,000원

03 | 수수료 납부하기 |
기타 등록 관련 수수료

■ 권리이전 등록료(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 특허권 : 매건 53,000원, 실용신안권 : 매건 40,000원, 디자인권 : 매건 40,000원, 상표권 : 매건 1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또는 인지세
가.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14,400원(등록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나.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21,600원(등록세 : 18,000원, 지방교육세 : 3,600원)
-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 추가

- 실시권(사용권)·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2006. 5.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000원
- 실시권·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 전용 매건 72,000원, 통상 매건 43,000원
- 질권설정등록·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000원(단, 국가기관, 법원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록료는 면제)
-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지번변경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 제외)·취소·말소·회복등록료 : 매건 5,000원
- 가등록료 : 매건 13,000원
- 신탁등록·그 변경등록료 : 매건 20,000원

04 | 수수료 납부하기 | 기타 심판 관련 수수료

- 정정청구료 : 전자 매건 3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 / 서면 매건 4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7,000원
 ※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의 경우 : 전자 매건 26,000원 / 서면 매건 36,000원
 ※ 하나의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두번째 이후의 정정청구료는 면제
- 심판·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 전자 매건 142,000원 / 서면 매건 150,000원
 - 보조참가 : 전자 매건 16,000원 / 서면 매건 18,000원

- 심판관의 제척·기피 신청료 : 전자 매건 1,000원 / 서면 매건 1,500원
- 비용액 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 심판청구서 관련 보정료 : 전자 매건 4,000원 / 서면 매건 14,000원

05 | 수수료 납부하기 | 각종 서류의 등·초본 발급신청료 등

- 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 매건 500원 및 우송료(첨부물 복사 가산료 : 매면 100원)
- 등록원부 사본·기록사항의 교부 신청료
 - 온라인으로 교부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 : 무료
 - 서면 수령 : 매건 500원 및 우송료(10면을 초과하는 경우 매면 100원 가산)
 - 모사전송 수령 : 매건 500원(10면을 초과하는 경우 매면 300원 가산)
- 출원관련 서류, 등록관련 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 필름류 및 광디스크류 포함)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 온라인 수령(공보류 또는 도서의 복사 제외) : 무료
 - 서면 수령 : 매면 100원 및 우송료
 - 모사전송 수령 : 매면 300원
- 특허(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료 : 전자 매건 5,000원 / 서면 매건 6,500원
- 휴대용 특허(등록)증 등 교부 신청료 : 전자 매건 7,000원 / 서면 매건 9,000원
- 온라인 특허(등록)증 발급 : 무료(2013. 7. 1. 부터 시행)

06

| 수수료 납부하기 |

PCT 국제출원 수수료

■ 국제출원 수수료

종 류		납부액(원)	납부기간	납부처
국제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330 CHF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특허청
	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초과매수 X 15 CHF		
조사료	한 국	영어 : 1,300,000		
		국어 : 450,000		
	오스트리아	2,419,000		
	호 주	1,963,000		
	일 본	725,000		
송 달 료		45,000		

※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 (CD-R 또는 온라인)로 출원시 국제출원료 할인액 : 300 CHF

※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75%를 반환받을 수 있음

■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수수료 계산시 주의 : 적색부분은 환율변동으로 수시로 변동

국제예비심사기관	납부액(원)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 소
한 국	심사료	450,000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4동 특허청, 고객지원실 우)35208
	취급료	238,000		
오스트리아	심사료	EUR 1,749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좌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EUR 183		
일 본	심사료	JPY 26,000	송금은행 : Bank of Tokyo-Mitsubishi 계좌명 : JPO/KR-WIPO 계좌번호 : 0807192 지점코드 : 428	Japanese Patent Office(IPEA/JP)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취급료	JPY 22,800		
호 주	심사료	AUD 590(820)*	송금은행 : Bank of Tokyo-Mitsubishi 계좌명 : JPO / KR-WIPO 계좌번호 : 0807192 지점코드 : 428	Australian Patent Office(IPEA/AU) P.O.Box200 woden, A.C.T. 2606 Australia
	취급료	AUD 289		

* 국제조사보고서가 호주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07

| 수수료 납부하기 |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 등

종 류				수수료		납부처
본국관청 출원 (한국 → 해외)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전자출원	매건 5,000원		한국특허청
			서면출원	매건 15,000원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전자출원	매건 3,000원		
			서면출원	매건 13,000원		
	국제출원	기본수수료	흑백표장	653 CHF		국제사무국
			색채표장	903 CHF		
		개별수수료		각 국가별 수수료		
		비개별수수료	추가수수료	1개류 당 100 CHF (3개류 초과시)		
			보충수수료	1 지정국 당 100 CHF		
	사후지정신청	기본수수료		300 CHF		
		개별수수료		각 국가별 수수료		
		비개별수수료	추가수수료	1개류 당 100 CHF (3개류 초과시)		
			보충수수료	1 지정국 당 100 CHF		
	국제등록존속기간 갱신신청	기본수수료		653 CHF		국제사무국
		개별수수료		각 국가별 수수료		
		비개별수수료	추가수수료	1개류 당 100 CHF (3개류 초과시)		
			보충수수료	1 지정국 당 100 CHF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177 CHF (국제등록 1건 당)		
지정국관청 출원 (해외 → 한국)	지정상품 보정료			매건 10,000원		한국특허청
	지정기간연장신청 수수료			1회차	20,000원	
				2회차	30,000원	

* 개별수수료를 납부하는 국가는 비개별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정기간연장신청은 2회까지만 가능

08

| 수수료 납부하기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 국제출원 수수료

종 류		납부액(원)		납부처
송달료		전자출원	5,000원	한국 특허청
		서면출원	15,000원	
기본료		최초 1디자인	397CHF	국제사무국
		추가 디자인 마다	19CHF	
공개료		1 도면 마다	17CHF	
		도면이 표현된 첫 면을 초과하는 면 마다(서면출원 경우)	150CHF	
추가수수료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는 1단어 당	2CHF	
지정 수수료 ※각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금액	표준지정수수료 (1수준)	1 디자인	42CHF	
		추가 디자인 마다	2CHF	
	표준지정수수료 (2수준)	1 디자인	60CHF	
		추가 디자인 마다	20CHF	
	표준지정수수료 (3수준)	1 디자인	90CHF	
		추가 디자인 마다	50CHF	
	개별지정수수료	각 체약당사자가 선언으로 정한 금액		

■ 국제등록 갱신료

종 류		납부액(원)		납부처
기본료(A)		최초 1디자인	200CHF	국제사무국
		추가 디자인 마다	17CHF	
지정 수수료	표준지정 수수료	1 디자인	21CHF	
		추가 디자인 마다	1CHF	
	개별지정 수수료	각 체약당사자가 선언으로 정한 금액		

■ 국제등록 변경 신청

종 류	금 액		납부처
명의변경	144CHF		국제사무국
권리자 성명 또는 주소 변경	1국제등록	144 CHF	
	추가 국제등록 마다	72CHF	
국제등록의 포기	144CHF		
국제등록의 감축	144CHF		
국제등록의 초본 신청	144CHF		
견본 사진 신청	57CHF		

09

| 수수료 납부하기 |

출원료 등의 감면 안내

(2016. 9. 1. 기준)

1. 감면 및 면제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등록)료, 4~9년분의 특허(등록)료(개인<면제대상자 포함>,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에 한함),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적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중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방법

반드시 출원·심사청구·기술평가청구·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등록 시에 면제·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3. 전액(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면 제 대 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증명 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재학증명서
5. 만 6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없음
6. 군복무 중인 일반 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12 4. 1. 이후 출원·심사청구·설정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복무증명서

※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면제임
2. 국가유공자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4.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에 한함 다만, 2012. 4. 1. 이후 복수디자인 출원하는 것부터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수는 3개 이하이며, 2016. 1. 1. 이후 1출원에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임.

4. 85%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 면 대 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만 65세 이상인 자		

※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면제임
2. 다만,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5. 7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개 인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맞을 것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의 기준에 맞을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3년 제출유예 인정 서류 –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3.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맞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2.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3. 소기업 및 중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4. 다만,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별표 1] 〈개정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3] 〈신설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6.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 5. 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0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 해당 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2분의 1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3. 전담조직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 없음

※ **유의**

1.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2.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3.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7. 3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 **유의**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8. 4~9년분의 특허(등록)료 3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1. 개 인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맞을 것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맞을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단,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3.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맞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4.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해당 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2분의 1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감면대상	요 건	증 명 서 류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0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단체	
5. 전담조직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선정된 직부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발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인증된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에 대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4~6년분 특허(등록)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음(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않음)

9.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

출원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출원 등을 할 당시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3호 서식(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

* 구비서류 :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1통, 감면대상 증명서류 1통,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통, 통장계좌사본1통

10

| 수수료 납부하기 |

수수료 납부요령 및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1. 출원료·등록료·수수료 납부요령

- 접수번호(납부자번호)부여일{서류접수일} 다음날까지 전국의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로 납부
- 우편으로 요금납부시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제출하여야 함
-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 상표등록료 2회 분할납부제 도입(2010. 7. 28.) 그간 상표등록료는 10년분을 납부하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이제 상표권의 설정등록 또는 갱신등록시에 5년분의 등록료를 내고,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나머지 5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음

2.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① **반환사유발생 통지 :** 납부자에게 과·오납, 무효심결확정등록 등 반환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

② **납부자 등의 반환신청**

-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를 제출(신청 시에는 반환신청인의 예금 계좌사본을 첨부)
 - * 온라인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
 - * 서 면 - 특허로 > 오른쪽 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 > 서면신청 > 서식다운로드
 - * 팩 스 - 팩스(042-472-3453)접수 가능
- 반환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③ **반환(계좌이체지급) :** 반환신청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11 | 수수료 납부하기 |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도

1. 수수료 자동납부제도의 의미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 등의 각종 특허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하는 대신 특허청에 사전 등록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이체 시키는 제도

2. 수수료 자동납부 대상 수수료

- A Type(1회 자동납부) :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등 1회에 한하여 해당 절차의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

- B Type(매년 자동납부) :
 제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정상 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납부하는 경우

3. 수수료자동납부 절차

- 사전절차 :「특허로」를 통해「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사전 제출



■ A Type(1회 자동납부) 특허수수료의 납부절차



■ B Type(매년 자동납부) 연차등록료의 납부절차



※ 연차등록료의 경우 매년 자동납부(B Type)이외에 납부서 제출에 의한 1회 자동납부(A Type)도 선택가능

12 | 수수료 납부하기 |

지식재산포인트(IP POINT) 제도

1. 지식재산포인트제도의 목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실시권 설정 및 무상 이전시, 권리 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미활용 특허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무상개방 특허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신산업 창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창조경제 구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대상자

■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개방한 경우의 권리 제공자

3.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기준

■ 다음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등을 통해 무상 개방된 건
- 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고, 권리 제공자와 「국세기본법」제2조 또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실시권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시기간은 3년이상이고,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대상 연도분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존속기간이 실시권의 실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실시권 또는 권리이전사항이 등록원부에 등록되어야 함

4. 신청 방법 및 부여 금액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서에 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로를 통해 신청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특허료, 등록료가 납부된 건에 한해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부여 금액

무상개방 형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금액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특허 등의 실시권 설정	매년 납부할 특허료·등록료의 50%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등 무상 이전	(특허) 30만 포인트/건(1회) (실용·디자인) 5만 포인트/건(1회)

5. 지식재산포인트 사용 방법

■ 지식재산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날로부터 5년이며, 적립된 포인트로 특허료, 등록료 및 기타 수수료 납부시 사용 가능(단, 국제출원료는 제외)

※ 1포인트는 1원
- 특허료 등 수수료 납부시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 금액만큼 차감
- 적립된 지식재산포인트 사용절차

※「특허로 홈페이지」→「수수료 관리」→「수수료 납부」→「온라인 납부」코너의 '납부대상 검색'에서 '특허수수료'를 선택한후 마일리지 사용(이용방법안내 참조)

6. 수수료 관련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전국 어디서나)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083
■ 특허청 국제출원과 ☎ 042)481-5208, 5206, 5199(PCT·마드리드·헤이그 수수료 관련)





제3장

특허청 고객지원 사업

Ⅰ. 특허고객 서비스 업무

Ⅱ.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지원사업

Ⅲ.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사업

Ⅳ.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결 지원



특허청



제3장 특허청 고객지원 사업

Ⅰ. 특허고객 서비스 업무

1. 특허청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운영
2.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01

| 특허고객 서비스 업무 |

특허청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운영

1. 주요업무

- 출원·등록 관련 서류 접수 (심판 관련 서류접수는 특허청 심판정책과, 서울사무소에서 가능)
- 등록증·우선권증명서류 등 교부, 각종 제증명·복사서류 발급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상담

2. 주소 및 대표전화

- 특허청 고객지원실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층(둔산동)
 - 대표전화 : ☎ 042)481-5200, 5226

- 특허청 서울사무소
 - 주소 : 우)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5층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대표전화 : ☎ 02)568-8155



02

| 특허고객 서비스 업무 |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1. 설립목적

특허청에 분산되어 있는 고객상담채널을 통합하여 특허넷 시스템 및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권리 창출 및 국민의 권익보호 지원

※ 2010. 3. 특허고객 콜센터를 특허고객상담센터로 명칭 변경

2. 주요업무

- [수신] 대표번호(1544-8080) 상담
 - 특허넷, PCT·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오류 처리 및 사용자 지원
 - 국내 지식재산권·국제 출원 제도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

- [발신] PC원격지원 상담, 엔젤콜·해피콜 상담
 - 전자출원 오류 해결을 위해 고객의 PC화면을 같이 공유하며 안내하는 PC원격지원 상담
 - 권리소멸 방지 등 고객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에 안내하는 엔젤콜
 - 상담완료 후 처리여부 확인 및 추가정보 제공을 위한 해피콜

- [모바일] 모바일 웹 및 카카오톡 상담
 - 모바일 웹(Web)을 통해 전화·문자·PC원격상담 신청 및 특허정보 제공
 -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를 이용한 1:1 채팅상담

3. 상담문의

- ☎ 1544-8080 (전국 어디서나), 상담시간 : 9시~18시 (토, 공휴일 제외)
- 홈페이지 : www.kipo.go.kr → 특허고객상담센터
- 모바일 웹 : m.kipi.or.kr/ipconsult



특허청



제3장 특허청 고객지원 사업

Ⅱ.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지원사업

1. 지식재산 창출 지원

2.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역량강화

01

|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지원사업 |

지식재산 창출 지원

1.1.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이 IP 분쟁 걱정 없는 글로벌 히트 상품을 창출하도록 상품개발 단계부터 브랜드·디자인·특허를 융합한 IP 종합전략 수립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액 300억원 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시 300억원 미만인 경우도 가능) • (가점)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참여기업, 월드클래스 300 참여기업(R&D 지원 종료 과제), 타 부처 지원 사업 참여 기업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IP전략전문위원(특허·디자인·브랜드), IP분석기관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의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을 위한 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이에 맞춘 특허기술 개발, 해외 권리화 전략 등 수립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 히트상품이 세계시장에서 1년 365일 IP분쟁없이 잘 팔리도록 제품개발단계부터 지재권 무장 및 IP Value-up 지원 • 지원대상의 특성에 따라 신제품 창출 유형(9개월) 및 제품 고도화 유형(7개월)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융합 IP 전략 지원 • 토탈아이덴티티(TI) 구축, 제품기반 융합 IP 개발, IP 포트폴리오·권리화 전략, 추가 개발 방향 설정 등
지원절차	참여 신청서 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지원대상 기업선정 → 사업 시작 → 과제수행 기관선정
지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5156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장전략팀 ☎ 02)3475-8590, 1302 / iprndinfo@kista.re.kr

1.2.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 대상 지재권(IP)과 연구개발(R&D)이 연계된 전략을 지원

• 중소기업에 지재권-연구개발 연계 전략을 지원하여 제품·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IP 창출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에 따른 중소기업

• (우대가점) 타 부처 지원사업 참여, 18대 산업분야별 10대 유망기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IP 스타기업, 대일무역수지 적자 상위 5대 품목 등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R&D 현장에 '특허전략 전문가'가 파견되어 R&D 단계별맞춤형·밀착형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5개월)

• 핵심특허 대응전략, IP 창출전략, R&D 방향 제시 전략, 특허 인프라구축전략 등

•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과 특허, 디자인과 브랜드가 연계된 IP 융복합 과제 지원



지원절차

참여 신청서 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지원대상 기업선정 ▶ 과제수행 기관선정 ▶ 사업 시작

지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5156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중소기업팀 ☎ 02)3287-4345, 4221 / iprndinfo@kista.re.kr

1.3. IP Star 기업 육성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 실시, IP 스타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지식재산권 5건 이상 보유 및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중소기업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전 컨설팅 결과와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 지재권 획득, 해외 지재권 획득, 특허기술 동향조사,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등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50백만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 
신청기간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 매년 1월경 ■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현장실사 ▶ 지원기업 선정 ▶ 지원 ▶ 사후관리
지원문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 042)481-8622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 02)3459-2827 ■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www.ripc.org 참조

1.4. 전통산업 IP 경쟁력 제고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응하여 지리적 표시 권리화(단체표장·증명표장)를 도모하고 지역 내 지식재산 인식 제고
- 지역 특산품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IP 권리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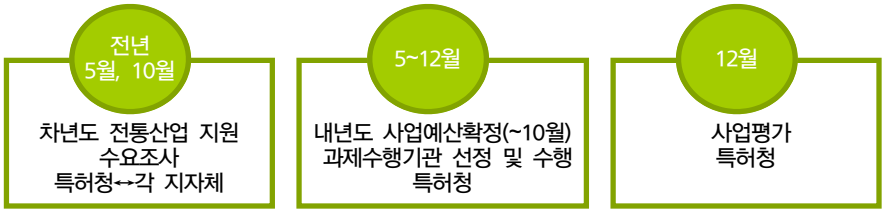
지원대상

- 지자체 및 해당 지역의 전통산업 종사기업 및 법인·단체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대상 지자체 및 전통산업 종사기업 및 관련 법인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역특산품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전반 지원
- (향토기업 IP 토대 구축) 지역내 농업·수산업·식품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대상 IP 경영환경 진단, 전문가 멘토링, 小특허맵 지원, 국내·외 IP 권리화 지원(디자인, 브랜드 등)

지원절차



지원문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 042)481-8660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 02)3459-2824
-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www.ripc.org 참조

1.5. 여성발명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우수한 여성발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여성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 여성발명품 전시회 등을 통한 판로지원 및 여성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 여성(대학생, 여성기업인 등)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여성발명창의교실 • 지식재산권과 발명에 관해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생활발명 발굴·지원 • 창의적 여성의 아이디어로 상품화가 용이한 생활발명을 발굴, 출원·디자인·시제품 제작 지원 및 시상 ■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개최 • 국내 여성발명·기업인(개인 가능)의 우수한 발명품 및 생산제품을 전시하며, 이를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 ■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및 포럼 개최 • 여성발명인과 기업들의 발명아이디어를 심사·시상하는 세계적 규모의 유일한 여성발명대회로, 공정한 경쟁 및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여성 발명품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 ■ 여성발명인 변리지원 서비스 • 여성발명아이디어의 구체화, 특허출원 안내 등 무료 변리 상담을 통해 여성발명 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해소
지원절차	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 공지 확인 ▸ 해당 사업 신청기간내 신청 ▸ 지원
지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042)481-8496 한국여성발명협회 ☎ 02)538-2710, www.kiwie.or.kr

02

|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지원사업 |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역량강화

2.1.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추진목표	■ 대학의 실용적인 특허교육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함
경진부문	■ (특허전략 수립부문) 세부적 기술주제에 대하여 국내·외 특허를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략 및 특허획득 방향을 수립 ■ (선행기술 조사부문) 산업별 가상의 출원서 또는 발명요약서에 대하여 관련된 선행기술 조사 후 특허가능성 판단 및 출원서 보정
수상자특전	■ 수상자 특전 • 대회 참가자 대상 특허 검색·분석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 기회 부여 • 수상자 취업 인센티브 제공(취업 우대 기관) • 수상자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관리
지원절차	■ 심사절차 • 심사절차 : 기초심사 → 서면심사 → 발표심사 → 최종심사 ■ 주요일정 : 홈페이지(www.patent-universiade.or.kr)를 통해 확인 ■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 대회 홈페이지(www.patent-universiade.or.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PDF, JPG파일) 업로드 • 온라인 답안/논문 제출 - 답안/논문 등록('아래아한글', 'MS-WORD' 형식)
참가자격	■ 국내 대학 대학(원)생 • 선행기술 조사부문 : 개인으로 참가 • 특허전략 수립부문 : 팀(3명 이내, 동일대학) 또는 개인으로 참가, 지도교수 1인(복수팀 지도 가능) 필요
참가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 02)3459-2806 ■ 홈페이지: www.patent-universiade.or.kr

2.2.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전공과목에 특허 등 지식재산을 연계 교육하여 예비 연구인력 및 창의인재 양성 ■ 대학의 자율적인 지식재산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대학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 ■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비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 지식재산 교육에 관심있는 대학 및 대학원생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대학(원) 지식재산 강좌 지원 • 전공 및 교양과목에 지식재산 연계교육 • 전문강사(변리사 및 변호사 등) 및 표준 교재 등 지원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지원 • 연간 1.8억원 5년간 9억원 지원 • 조건 : 지식재산 전담교수 채용, 지식재산 강좌 개설(6개 강좌 18학점 이상) 등 ■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 연간 4억원 5년간 18억원 지원(1년차 2억원 지원) • 조건 : 전문학위과정 개설(석사과정), 학부과정에 지식재산 강좌 개설, 교수진 등 인프라 구축
지원절차	지원사업 공고 ▶ 사업 설명회 ▶ 서류 및 발표심사 ▶ 수행기관 선정 ▶ 사업 수행
지원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042)481-5183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 02)3452-2832 ■ 홈페이지: www.kipa.org

2.3. 창의발명 인재 양성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청소년 대상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창의적인 발명 인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양성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일반학생 발명교육 • 일반학생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196개 발명교육센터에서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대상 발명교육을 실시 ■ 발명영재교육 • 창의적이고 발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영재를 차세대영재기업인으로 육성하고, 시도교육청의 발명영재학급·영재교육원 운영을 지원 ■ 특성화고 발명교육 • 전문계 고등학교에 발명·특허 교육을 정규교과로 제공하여 학생들을 지식재산 창출능력을 갖춘 실무 전문인력으로 양성 ■ 우수 발명활동 발굴·확산 • 창의력이 뛰어난 발명인재와 우수발명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바람직한 발명인재상을 정립하고 학생들의 발명의식 고취 –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창의력 챔피언대회, YIP(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절차	■ 발명교육센터 • 전국 196개 발명교육센터별 교육생 모집 공고(연중 수시(지역마다 상이) ※ 관할 발명교육센터는 ip-edu.net 확인) ▸ 학교별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 및 선발 진행 ■ 각종 발명경진대회 • 대회 공고(한국발명진흥회 kipa.org 및 일선 학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 ▸ 신청요강 및 절차 확인후 접수
지원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042)481-8462 ■ 한국발명진흥회 미래인재실 ☎ 02)3459-2747 ■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및 발명교육지원센터 www.ip-edu.net 참조

2.4.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정부 R&D를 수행하는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방향을 설정하여 우수특허를 창출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전략 지원
지원대상	대학·공공연에서 정부 R&D 과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 사업단 및 연구단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대학·연구기관에서 수행중인 정부R&D 과제를 대상으로 IP포트폴리오 구축 ·핵심특허 대응 및 전략보강 등 지재권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 ■ (정부 R&D 특허설계지원) 대학·공공연구기관·연구단이 수행중인 연구개발 완료단계 정부 R&D 과제를 대상으로 최적의 권리범위 설정 및 권리확보 전략을 종합 지원
지원절차	참여기관 모집공고 ▶ 서류·발표 심사 ▶ 지원대상 선정 ▶ 과제수행 기관선정 ▶ 사업 수행
지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5173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정부협력팀 ☎ 02)3475-1325, 1326 홈페이지 : http://ippro.kista.re.kr



2.5.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정부 R&D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우수특허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단계에서 특허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

지원대상

정부 R&D 단계 중 연구·기획(중·대형과제) 및 선정·평가(단기·소형과제) 대상 과제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맞춤형 특허분석 제공 및 분석 목적과 지원기관에 따른 매칭비용 적용(기본 5:5매칭)

사업구분		지원분석 (분석기간)	실부담금 (단위:만원)	지원 R&D단계	지원 형태	지원 방법	사업 지원 시기
특허 동향 조사	A타입	3개월	1,500	연구기획	특허맵	사전 수요조사 우선지원 (공문)	연중 (상시)
	B타입	2개월	1,000				
	C타입	1개월	500				
선행특허조사		0.5개월	39	선정·평가	유사도 평가		

■ 주요 타입별 지원 내용

- A타입 : 핵심특허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장벽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R&D 방향 도출
- B타입 : 연구과제 세부 기술별 연구개발 활동 패턴 및 특허점유율 분석
- C타입 : 기획대상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각 주체별 기술개발 활동추이와 기술경쟁력 현황분석(정량분석 제공)
- 선행특허조사 : 선행 특허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중복 여부 점검

지원절차

수요조사 (이전년도) ▶ 사업 지원요청서 접수·협약 ▶ 과제수행 기관선정 ▶ 특허분석 진행 ▶ 최종 보고서 제공 후 완료

지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5173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동향팀 ☎ 02)3475-8536, 8535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

2.6.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정부 부처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R&D 기획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맞춤형 특허분석을 통해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이를 통한 R&D 예산 효율성 제고
지원대상	정부 부처 및 과제 기획 전담기관, 민간(대학, 공공연, 기업등)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全 산업분야의 특허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최근 부상기술 및 한국의 경쟁력 수준 등을 기반으로 미래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R&D 효율성 제고 ■ 특허 관점의 미래 유망기술 발굴 및 미래유망 제품,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 특허분석 결과를 산·학·연 등에 제공함으로써 R&D 계획 수립 시 활용 할 수 있는 특허분석 보고서 제공
지원절차	부처대상 수요조사 (상반기) ▶ 특허 메가트렌드 분석 후 제공 ▶ 산학연 대상 수요조사 (하반기) ▶ 분석대상 기술·제품 선정 ▶ 유망 기술·제품 도출 ▶ 결과 제공 및 발표
지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5173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창의혁신팀 ☎ 02)3287-4225, 4328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



제3장 특허청 고객지원 사업

Ⅲ.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사업

1. 지식재산 금융 지원
2.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01

|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사업 |

지식재산 금융 지원

1.1. 특허기술 평가 비용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IP 금융연계 평가지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벤처캐피탈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허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허청이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 대출, 투자 등을 시행 (IP 사업화연계 평가지원) 등록 특허·실용신안권의 거래 및 사업화 등과 같은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해 등록 특허·실용신안권의 성능분석 및 기술인증 등 신청 특허권자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특허기술 평가보고서 제공
지원대상	(IP 금융연계 평가지원) 지식재산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IP 사업화연계 평가지원)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 권리자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금융·투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IP 가치평가 비용을 특허청이 지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투자기관이 보증, 대출, 투자 등 시행 •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5백만원 지원(VAT는 신청인 부담) • (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3백만원 지원(VAT는 신청인 부담) •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90% (최대 13.5백만원) 지원 (VAT는 신청인 부담)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객관적 평가결과 제공 •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5백만원 지원(VAT는 신청인 부담)
지원절차	<IP 금융연계 평가지원> 사전상담 및 예비선정 (금융기관) → 평가의뢰서 송부 및 평가 상담 (평가기관) → 서류심사 (발명진흥회) → 평가수행 (평가기관) → 평가비용지원 (발명진흥회) → 투융자판단 (금융기관) <IP 사업화연계 평가지원> 사전상담 (평가기관) → 신청/접수 (온라인) → 심의 및 최종선정 (발명진흥회) → 계약체결 (신청인-평가기관) → 평가수행 (평가기관) → 평가비용 지원 (발명진흥회)
지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042)481-5807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938 www.kipa.org 추가적인 지식재산금융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 www.fsc.go.kr에서 확인 가능

02

|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사업 |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2.1. 지식재산(IP) 활용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기업의 특허·제품·사업화 관련 전략을 제시하는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포함)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50개 과제 내외 ■ 지원방식 : 최대 6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컨설팅사(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 지원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30% 현금 매칭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컨설팅 기간) ■ 세부지원내용 • IP 제품혁신 : 이종분야 특허검색 및 창의적 문제해결방법론을 활용하여 제품문제해결, 신제품 발굴, 제품디자인, 디자인 개선안 제시 등 지원 • IP 사업화 :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IP사업화 컨설팅 지원
지원절차	사업 공고 ▶ 기업선정 (서류 및 PT심의) ▶ 사업 수행사 선정 ▶ 계약체결 / 기업부담금 납부 ▶ IP활용 전략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 사후 관리
지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042)481-8501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 02)3459-2942, 2937 홈페이지 : www.kipa.org/kipabiz (로그인→사업화지원→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 클릭)

2.2. 반도체 IP 수출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내 반도체IP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마케팅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지원대상

■ 참여대상(아래 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지원 가능)
- 해외(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반도체IP 전문기업(IP Biz.를 희망하는 설계기업)
- 해외 파운드리 3rd Party 등록을 희망하는 국내 반도체IP 전문기업

■ 기술 분야
- Digital / Analog Mixed Signal / Interface / Memory 등 반도체 설계IP 전 분야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 프로그램

① SMIC Technology Symposium 참가지원(연1회, 상해)
- 중국 최대 Foundry인 SMIC가 Partner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기술 심포지엄 참가 초청권 배부 및 전시부스 운영

② 중국반도체산업협회 IC분과 연례총회(IC-CAD) 참가지원(연1회, 중국)
-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의 산하기관인 CIC(China Integrated Circuit)가 개최하는 IC Design 기업 연례 총회에서 전시부스 운영 및 포럼 발표

■ 지원 내용
- 각 행사별 참가 초청장 확보, 전시 부스 운영 및 기타 필요 경비 지원

구 분		SMIC Symposium	ICCAD Conference
참가 초청장		협회에서 일괄 발부	-
추진비용	부스 임대료	-	총 비용의 50%
	왕복 항공료	기업 당 1인 왕복 항공료	
	숙박료	기업 당 1객실(2인실)	
제반준비*	IP Brochure	제품 브로셔, 전시용 홍보 판넬, 배너 등	
IP-SoC Society	기업 초청	참가기업 모두 초청	-

* 희망 기업에 한해서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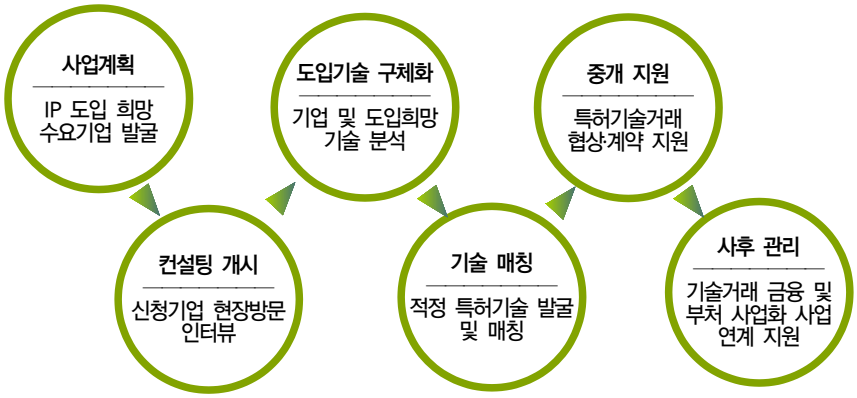
지원절차

참여기관 모집공고 (5월) → 서류심사 (5월) → 지원기관 선정 (6월) → 프로그램 참여 (9~10월) → 결과 제출 (11월)

지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3465
한국반도체산업협회 IP유통지원센터 ☎ 02)570-5273
홈페이지 : http://www.kipex.org

2.3.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술거래기관의 역량을 제고
지원대상	■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외부로부터 특허기술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활용하여 라이선싱, 거래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의 기술도입의지 파악, 기업의 경영상황 및 보유 기술에 대한 사전정보를 통해 적절한 컨설팅 방향을 설정하는 현장 방문 인터뷰 실시 ■ 현장 방문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특허기술 도입 희망 기업의 기술, 경영 역량 등을 고려한 맞춤형 특허기술거래 컨설팅을 지원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특허기술 거래 컨설팅 지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042)481-5322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거래중개소 ☎ 02)3459-2728, 2786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 ※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 지식재산권 거래 수요자와 공급자, 서비스 제공업체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특허청



제3장 특허청 고객지원 사업

Ⅳ.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결 지원

1. 국내 지원 사업
2. 해외 지원 사업

01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결 지원 |

국내 지원 사업

1.1.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자 계층에게 권리 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만 19세 미만, 영세개인발명가(월수입 220만원 이하), 소기업,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

※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대상 일부 변동 있음,

*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 전화, 온라인, 내방자 및 지역순회 상담 실시
- 서류 작성 지원 - 명세서, 도면 등 출원관련 서류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
- 심판·심결취소소송 무료 대리
 -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상표등록취소
 - 위 심판과 관련된 심결취소소송
- 침해관련 민사소송비용 지원
 - 사건당 최대 500만원
 - 대기업과 분쟁 시 최대 1,000만원

지원절차

- 서류작성 및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원 절차



- 특허침해 민사소송비용 지원 절차



※ 지원여부 심사기준 : 등록가능성, 승소가능성 및 지원 필요성 등 검토

지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042)481-822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02)6006-4300

1.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사업개요 (사업목적)

산업재산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등을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를 분쟁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간의 합의를 유도해 내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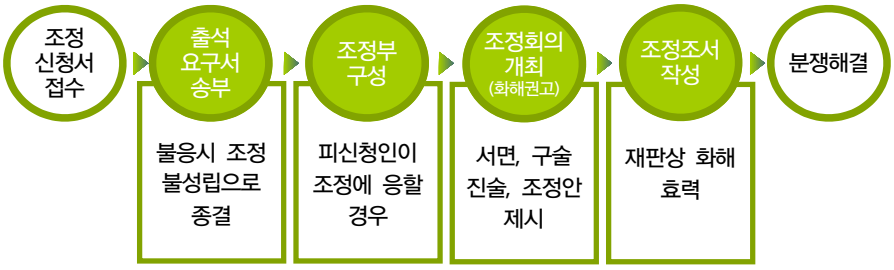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산업재산권의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영업비밀(기술상 영업비밀) 보유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발명진흥법 제43조의2)
- 신청대상 분쟁 :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기술상 영업비밀)의 분쟁 (발명진흥법 제44조)

지원내용

- 분쟁조정 신청 시, 전담 조정부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유도함
 - 쟁송능력이 부족한 영세 산업재산권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조정이 잘 되었을 경우, 수년이 걸릴 분쟁이 수개월 내에 해결될 수 있음
 -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조정과정에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음

지원절차



※ 조정절차는 3개월 이내에 종료됨(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제시된 조정안을 양당사자가 받아들일 경우 조정조서가 작성·발부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지님

지원문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 5925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02)6006-4300, www. pcc. or. kr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www. kipo. go. kr/adr

02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결 지원 |

해외 지원 사업

2.1.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제 특허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허분쟁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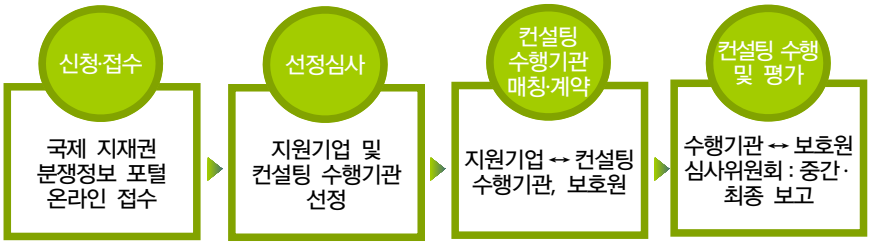
외국 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구 분	주요 내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지원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수출전략	수출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사전대응전략 제공
현안전략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등 특정 현안극복을 위한 현안전략 제공
스타트업 IP보호	스타트업 기업의 수출전략 및 IP보호 전략 지원
K-브랜드 보호	상표·디자인 관련 해외 분쟁 예방·대응 전략 제공
소액	전주기적 컨설팅 내용을 소규모 업무단위별 지원
연계집중	분쟁장기화시 최종종결을 위한 집중전략 제공

지원절차



지원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 ☎ 02)2183-5871~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www.koipa.re.kr

2.2.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 제공

개요

국제 지재권분쟁 관련 정보(국제 지재권분쟁 동향, 판례, 이슈보고서,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등)를 제공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 운영(http://www.ip-navi.or.kr/)

주요내용

■ 국제 지재권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분석정보 제공
- 국내·외 국제 지재권 분쟁동향 및 관련 이슈 제공
- 법률적 쟁점 및 판결동향을 보여주는 소송사례 분석정보 제공

■ 특허관리회사(NPE) 활동 현황 조사·분석
- 소위 특허괴물이라 말하는 NPE(Non-Practicing Entity)의 활동현황 및 우리 기업과의 분쟁 현황 조사·분석

■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공–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지재권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현지 정보(출원, 모조품 단속신고, 분쟁대응 등)를 담은 가이드북 제공
- 현재까지 28종(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캐나다, 인도, UAE 등) 발간



2.3.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사업개요 (사업목적)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에서의 권리확보, 침해 대응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지원대상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내용

- 해외 현지 지재권 관련 상담
 - 현지 국가의 지재권 확보 및 보호 관련 상담 수시 지원
- 상표·디자인 출원 및 침해조사 비용 지원
 - 상표, 디자인 출원 : 현지 국가 출원비용의 50% 지원(年 8건/社)

구 분		중국	베트남	태국	일본	독일	미국
지원 한도	상 표	300$/건	300$/건	500$/건	500$/건	1,000$/건	600$/건
	디자인					600$/건	1,00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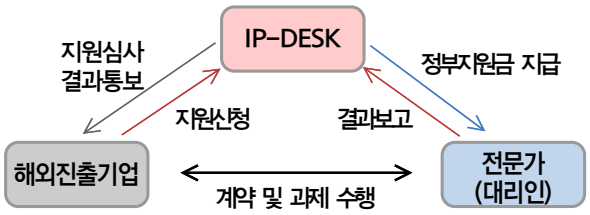
 - 세관 지재권 등록 : 현지 소요비용의 50% 지원(年 8건/社)

구 분	중국	베트남	태국	일본	독일	미국
지원한도	300$/건	1000$/건	300$/건	700$/건	1,000$/건	500$/건

 - 침해조사 : 현지 국가 출원비용의 70% 지원 (年 3건/社)
 * 지원한도 : 1회당 6,000$(행정단속 시 10,000$ 이내)
 * 단, 2, 3회차부터 지원비용의 각 50%, 30%로 조정

지원절차

- 해외 현지 지재권 관련 상담
 - 전화, e-mail, 내방 상담을 통한 수시 지원
- 출원 및 침해조사 비용 지원



-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 IP-DESK에 지원 신청
- 지원 적격 여부 심사 및 결과 통보
- 대리인과 계약 및 과제 수행 후 정부지원금 지급

지원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 042)481-508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
 - ☎ 02)3460-3351~2, www.kotra.or.kr



붙임

1. 자주 문의하는 서식 리스트 및 작성예제
2. 특허청 유관기관 현황
3.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4. 권리별 법정 기간
5. 출원·등록·심사 및 심판 주요통계
6. 문의전화 안내 일람표
7. 찾아보기(색인)

01

| 붙임 |

자주 문의하는 서식 리스트 및 작성예제

순번	서식명	법령별 서식번호	작성예제
1	보정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예제1
2	보정(보완)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예제2
3	보정(절차보완)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예제3
4	기간연장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예제4
5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2호서식]	예제5
6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예제6
7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예제7
8	권리이전 등록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예제8
9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예제9
10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예제10

[별첨 1] 명세서 등 보정서

▶ 출원의 요약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보 정 서

【보정구분】 □출원서 등 보정(보완) ■명세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 □정정명세서 등 보정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10-2004-0012345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1-1-2004-000123-45
【보정(보충)할 서류】특허출원서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청구항 5
【보정(보충)방법】추가
【보정(보충)내용】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딘,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기타사항】 □재심사청구 □지정기간단축신청)
(【단축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를 참조합니다)
【보정료】 14,000 원
(【추가심사청구료】 44,000 원) ☞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 적용
【합계】 58,000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2호를 참조합니다)

[별첨 2] 출원서 등 보정서

▶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내용의 취지를 보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보정(보완)서

【보정 구분】 ■ 출원서 등 보정 □ 상표견본의 보정 □ 시각적 표현의 보정
□ 수정정관(규약) 제출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절차보완
【제출처】 □ 특허청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40-2004-0012345
(【출원번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이의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1-1-2004-000123-45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상표등록출원서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보정(보완, 보충)대상항목】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보정(보완, 보충)방법】 정정
【보정(보완, 보충)내용】
【보정 전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 제41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연극예약알선업, 학원경영업
【보정 후 상품(서비스업)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서비스업)류】 제41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미술학원경영업, 피아노학원경영업

(【그 밖의 사항】 □ 지정기간단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수수료】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보정(보완)료】 14,000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1호 참조)

[별첨 3] 도면 등 보정서

▶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보정(절차보완)서

【보정 구분】 □ 출원서 등 보정 ■ 도면 등 보정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출원서 보완
【제출처】 □ 특허청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30-2004-0012345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1-1-2004-000123-45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 도면 1.1
【보정(보완, 보충)방법】 정정
【보정(보완, 보충)내용】

정정한 도면 1.1

(【그 밖의 사항】 □ 재심사청구 □ 지정기간단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수수료】 (기재방법 제10호를 참조합니다)
【보정료】 14,000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방법 제12호를 참조합니다)

[별첨 4] 기간연장 신청서

▶ 특허청장 등이 정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신청구분】 ■지정기간연장 □지정기간단축
□디자인비밀기간연장 □디자인비밀기간단축
□법정기간연장 □기간경과구제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10-2004-0012345

【기간연장(기간단축, 기간경과구제)의 표시】

(【제출할 서류】) 보정서

(【접수(발송)번호】) 1-5-2004-000123-45

【연장이유(단축이유, 기간경과이유)】 출원인의 사정에 의함
또는 별지와 같음(구체적으로 적을 경우)

(【연장신청횟수】) 1회

【연장(비밀기간 단축)희망기간(경과이유 소멸일자)】 1월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수수료】 20,000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별첨 5] 우선심사 신청서

▶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한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음

[별지 제22호서식]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구 분】 □심사청구 ■우선심사신청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제3자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16-0001234
【발명(고안)의 명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자전거용 표시램프
(【기타사항】 □심사유예신청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조사의뢰된 출원으로 국가의 금융지원 등을 받은 녹색기술관련 특허출원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개월)
(【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16. 4. 1.
(【국제특허분류】)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수수료】(기재요령 제6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심사청구료】 원)
(【우선심사신청료】 167,000원) ☞ 실용신안등록출원인경우는 86,000원

【첨부서류】 1. 우선심사신청 설명서 1통
2.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8호 참조

[별첨 6] 출원인 변경 신고

▶ 특허 출원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구 분】 ■출원인변경 □출원인지분변경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변경후 출원인(양수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10-2004-0012345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자동차안테나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성명(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4-123456-1
【변경후】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변경원인】) 전부양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홍길동 (홍길동) 또는 서명

(【수수료】) 13,000원 ☞ 상속 및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는 6,500원

【첨부서류】 1.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양도증 1통)
2.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1. 양도증 작성의 예

【서류명】 양도증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4-0012345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자동차안테나

【취지】 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전부를 양도함

【양도일자】 2004.07.01

【양도인】

【성명】 홍길동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60101-1234567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양수인】

【성명】 김출원 (김출원)

(【주민등록번호】) 690102-1345678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100번지

2. 출원인변경 관련 구비서류

(1)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① 양도 – 양도증[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등록한 인감날인. 출원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를 제출]

② 증여, 상속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③ 법인 분할 · 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④ PCT 국제단계에서의 명의변경을 기초로한 출원인변경 – 기록변경통지서

(2) 동의서

– 출원인중 일부가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른 출원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별첨 7]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신고

▶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인감·전화번호** 등(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대표자의 성명**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구 분】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출원인코드 정정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변경(경정, 정정)내용】

(【변경(경정, 정정)항목】) 주소

【변경(경정, 정정)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변경(경정, 정정)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0번지

【변경(경정, 정정)원인】 이사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별첨 8]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 특허(등록)권의 전부를 이전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대상권리】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신청구분】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등록권리자(양수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전받을 지분】) (기재요령 제3호 라. 참조)
【등록의무자(양도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4-123456-1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전할 지분】) (기재요령 제4호 마. 참조)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10-0123456-00-00
(【권리의 표시】)
(【상품류, 서비스업류(디자인대상 물품)】
【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디자인 일련번호)】)
【등록원인】 전부양도
(【특약】)
(【가등록 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김출원 (대리인) 김출원 또는 서명

등록의무자 홍길동 (대리인) 홍길동 또는 서명

(대위신청인) (대리인) 또는 서명

【납부금액】(기재요령 제12호 참조)

【등록료】 53,000원

(【등록세】) 21,600원

(【인지세】) 20,000원

【합계】 94,600원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4호 참조)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별첨 9]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 상표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전액납부)

[별지 제23호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12134-5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번호】 40-0123456-00-00
【갱신등록 제외 대상】 ☞ 갱신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분류구분】 KR(NICE)
【상품(서비스업)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등록료】(기재요령 제7호 참조)
【분할납부 여부】 ■전액납부 □분할납부
【갱신등록료】 1개류 310,000원
【등록세】 9,120원
【합계】 319,120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첨부서류 및 견본】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서류명】)
(【출원번호(심판번호)】)

[별첨 10] 특허증 재발급 신청서

▶ 특허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별지 제29호서식]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신청 구분】 ■ 특허(등록)증 발급 □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 휴대용 특허(등록)증 정정 발급
□ 특허(등록)증 재발급 □ 휴대용 특허(등록)증 재발급
□ 등록원부 발급 □ 등록원부기록사항 발급
□ 자료열람 □ 자료복사 □ 서류등본(초본) 발급

【제출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I-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특허청참조번호]】 10-0123456-00-00
【신청대상】 ☞ 특허(등록)증 발급인 경우 해당없음
【신청부수】 1부
(【신청이유】) 분실
(【수취방법】) 우편
(【수령인】) 김출원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출원 (김출원) 또는 서명

【수수료】 6,500 원 (기재요령 제8호를 참조합니다)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0호를 참조합니다)

02 | 붙임 |

특허청 유관기관 현황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 〉〉〉

(1) 설립 목적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며 국내 지식재산 산업을 보호·육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설립

(2) 주요 업무

- 발명인식 제고를 위한 발명진흥기반 조성사업
-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사업
-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사업
- 특허기술제품 판로개척사업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발명진흥사업

(3) 주소 및 문의

- 주소 : 우)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발명진흥회)
- 문의 : ☎ 02)3459-2800, FAX 02)3459-2999

특허정보원 http://www.kipi.or.kr 〉〉〉

(1) 설립 목적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보급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2) 주요 업무

- 특허청 선행기술 및 상표조사
- 국제특허분류(IPC) 부여 및 한국특허정보의 보급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특허정보조사
- 국내·외 특허정보 수집, 처리, 가공
- 특허문서전자화센터, 데이터관리센터 및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 대민 특허정보조사 서비스
- 특허정보와 관련한 연구·기획

(3) 주소 및 문의

- 주소 : (본원) 우)3520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5층(둔산동, KDB빌딩)
 (서울지원) 우)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7층(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문의 : (본원) ☎ 042)489-9270, FAX 042)489-9271
 (서울지원) ☎ 02)6915-1400, FAX 02)6915-1409

한국지식재산전략원 http://www.kista.re.kr ›››

(1) 설립 목적

지식재산전략으로 국가 R&D 경쟁력 강화

(2) 주요 업무 방향

-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 기반 R&D 전략 경쟁력 강화
- 지식재산 활용 촉진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신사업 육성
- IP-R&D 서비스 제공을 넘어 신뢰받는 조직으로 사회적 책임 확대

(3) 주소 및 문의

- 주소
 (본원) 우)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8층(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분원) 우)0613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5, 우신빌딩 9층
- 문의 : ☎ 02)3287-4250, FAX 02)3287-435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www.kiip.re.kr ›››

(1) 설립 목적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해 주요선진국의 동향 파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실효성 있는 제언을 위해 설립

(2) 주요 업무

- 국내외 지식재산의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 지식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의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기업에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공동연구

(3) 주소 및 문의

- 주소 : 우)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3, 9층(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문의 : ☎ 02)2189-2600, FAX 02)2189-269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www.koipa.re.kr 〉〉〉

(1) 설립 목적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심적인 역할 수행 및 업종별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지재권 보호사업 관련 정책 제안을 하고자 설립

(2) 주요 업무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및 정보제공
- 국내 위조상품 단속활동 지원 등 지재권 보호
-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지원
-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지원

(3) 주소 및 문의

- 주소 : 우)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6층(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문의 : ☎ 02)2183-5800, FAX 02)2183-5899

한국여성발명협회 http://www.inventor.or.kr 〉〉〉

(1) 설립 목적

여성들에게 발명 생활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여성 발명 인구의 저변 확대를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발명풍토를 조성하며, 지식기반 사회와 세계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잠재력을 창의성 계발로 이끌어 냄으로써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을 도모하고자 설립

(2)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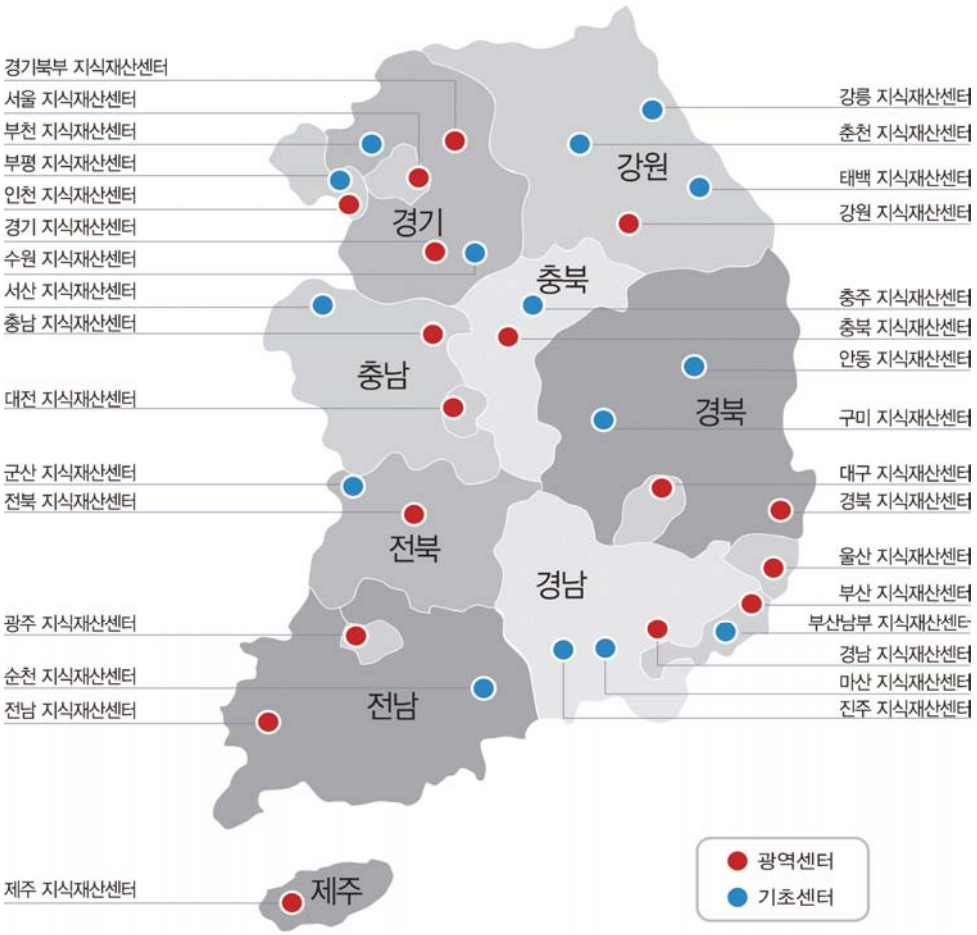
- 여성 발명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반 구축
- 잠재력 있는 여성 발명가 발굴·육성
- 여성 발명의 사업화 지원과 여성 발명 장려사업

(3) 주소 및 문의

- 주소 : 우)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17층(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문의 : ☎ 02)538-2710, FAX 02)538-2714

03 | 붙임 |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운영기관	지방상공회의소	발명진흥회 지회	테크노파크(TP)	기타	합계
개소	18	4	4	3	29

운영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개소	1	2	1	1	1	1	1	4	4	2	2	3	2	1	2	1	29

구 분	광역센터	기초센터	합계
개소	16	13	29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연번	센터명	운영기관	주 소	전 화
1	서울지식재산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1층	02-2222-3860
2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031-500-3043
3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032-810-2882
4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033-749-3327
5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041-559-5700
6	대전지식재산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6~208호	042-930-4455
7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043-229-2732
8	부산지식재산센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2	051-974-9065
9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052-228-3087
10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053-242-8079
11	경북지식재산센터	포항상공회의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33	054-274-5533
12	경남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055-210-3085
13	전남지식재산센터	목포상공회의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242-8587
14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062-954-3841
15	전북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전북 TP 벤처지원동 105호	063-252-9301
16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064-755-2554
17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CRC 빌딩 13층	031-500-3043
18	수원지식재산센터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031-244-8321
19	부천지식재산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3호	070-7094-5483
20	춘천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보듬관 403호	033-254-6580
21	태백지식재산센터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88-1	033-552-5555
22	강릉지식재산센터	강릉상공회의소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033-643-4413
23	서산지식재산센터	서산상공회의소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 서림빌딩4층	041-663-0041
24	충주지식재산센터	충주상공회의소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	043-843-7005
25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607 새마을회관6층	051-645-9683
26	안동지식재산센터	안동상공회의소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054-859-3093
27	구미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054-454-6613
28	진주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55	055-762-9411
29	순천지식재산센터	순천상공회의소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6	061-741-5411

| 붙임 |

04 권리별 법정 기간

1. 출원심사 청구기간

특허	•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특§ 59②) • 원출원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분할/변경/이중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특§ 59③) 2017년3월1일 이후 출원은 3년으로 단축
실용신안	〈2006. 10. 1. 이후 출원에 적용〉 •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실§ 12②) • 원출원일로부터 3년경과 후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실§ 12③)

2. 보정기간

특허	〈2001. 6. 30. 이전 특허출원〉 1) 특허출원일, 우선권 주장의 최선일부터 1년 3월 이내(구 특§ 47①) 2) 상기 1)의 해당일부터 1년3월을 경과한 후 특허결정등본의 송달전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간(구 특§ 47②) ① 출원심사의 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 ② 제3자로부터 출원심사청구가 있다는 통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정하는 경우 ③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지정기간) ④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하는 경우
	〈2001. 7. 1. 이후 2009. 6. 30. 이전 특허출원〉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특§ 47) ① 특허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제출기간(지정기간) ②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2009. 7. 1. 이후 특허출원〉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특§ 47) ① 특허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제출기간(지정기간) ②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
실용신안	〈1999. 7. 1. 이후 2006. 9. 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2월 이내(구 실§ 13①·구 실칙§ 9) ② 구 법 제12조(기초적요건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지정기간내
	〈2006. 10. 1. 이후 2009. 6. 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의 기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실§ 11) ① 실용신안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지정기간) ②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2009. 7. 1. 이후 실용신안출원〉 특허법 준용

디자인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디§ 48④)
상표	•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상§ 40) ① 출원공고의 때(출원공고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출원공고결정이 없는 경우)까지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정 가능 ②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상§ 116)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의견서 제출기간내 (상§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 54②·상§ 210②·상§ 87②)
	• 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상§ 41) ①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내(지정기간)(상§ 54②·상§ 87②) ②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내(지정기간)(상§ 66①) ③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상§ 116)

3. 분할출원 가능기간

특허	**〈2001. 6. 30. 이전 특허출원〉** • 특허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정 기간과 동일 • <2001. 7. 1. 이후 2009. 6. 30. 이전 특허출원> • 특허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정 기간과 동일 **〈2009. 7. 1. 이후 특허출원〉** ① 특허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특§ 52) ②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제132조의3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015. 7. 29. 이후 특허출원〉** ①~②또는 ③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는 그 날까지 기간)
실용신안	**〈1999. 7. 1. 이후 2006. 9. 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구법 제12조(기초적 요건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지정기간내 ② 구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정 가능기간(출원일부터 2월)내(구 실§ 16)
	〈2006. 10. 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에서 정한 분할출원 가능 기간 내
디자인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디§ 50③)
상표	• 상표법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보정기간내(상§ 45①)

4. 변경출원 가능기간

특/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선출원이 2006. 10. 1. 이후 출원에 적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 30일의 기간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특§ 53)
	•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선출원이 2006. 10. 1. 이후 출원에 적용) 특허출원일부터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 30일의 기간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실§ 10)
상표	최초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상§ 44④)

5. 이중출원 가능기간(원출원이 1999. 7. 1. ~ 2006. 9. 30. 출원에 적용)

•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로 이중출원 할 수 있는 기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 1년이내(구 특§ 53)

•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
①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②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단,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본다.

6.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인정 기간

• 무권리자가 등록받지 못하게 된 날(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특§ 34)(실§ 11)(디§ 14)

특허	〈2017. 3. 1. 이전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까지 적용〉 • 무권리자의 특허의 등록공고일부터 2년 이내 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특허되었음을 이유로 취소결정·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특§ 35)(실§ 11) 〈2017. 3. 1.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부터 적용〉 • 무권리자에 대하여 특허되었음을 이유로 취소결정·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특§ 35)(실§ 11)
디자인	•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디§ 45)

7. 출원공개 시점

특/실	• 특허출원일, 우선권 주장의 최선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다만, 이 기간 전이라도 출원인이 신청한 때(특§ 64)(실§ 15)
디자인	•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 송달 전 출원인이 공개신청 한 때(디§ 52)

8. 조기공개신청 취하가능기간

•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특칙§ 44③)(실칙§ 17①)(디칙§ 48②)

9.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관련기간

특/실	•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기간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특§ 54②)(실§ 11)
	• 조약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우선권 주장 최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특§ 54⑤)(실§ 11)
디/상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기간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 이내(디§ 51②)(상§ 46②)
	• 조약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상표·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디§ 51④)(상§ 46④)

10. 국내우선권주장 관련 기간(상표·디자인은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 없음)

• 국내우선권주장 기간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특§ 55①)(실§ 11)

•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취하간주 시기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특§ 56①)(실§ 11)
※ 선출원이 2001. 7. 1. ~ 2006. 9. 30. 이전 출원된 실용신안출원인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한 때(구 특§ 56①)(구 실§ 19①)

•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우선권주장 취하가능 시기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 이내(특§ 56②)(실§ 11)

11. 공지예외주장(신규성상실예외, 출원시특례) 관련 기간

특/실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출원으로 보는 경우의 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12월 이내에 출원된 때(2012.3.15. 이후 출원적용; 2012.3.14. 이전 출원은 6개월)(특§ 30①)(실§ 5①) 1)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권리를 가진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디자인	•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원된 때(디§ 36①)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	•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가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상§ 47①)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날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날 3)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날 4) 조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날

• 증명서류의 제출기간
출원시 기재시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출원 이후에도 보완수수료 납부한 경우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또는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특§ 30②,③)(실§ 11)(디§ 36②)(상§ 47②)

12. 신규 설정 등록료 납부기간

특/실/디	• 정상납부기간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특§ 79)(실§ 16)
	• 추가납부기간 정상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기간경과 후 6월 이내에 추가납부 가능함. 특허(등록)료의 1개월이내 3%, 2개월이내 6%, 3개월이내 9%, 4개월이내 12%, 5개월이내 15%, 6개월이내 18%의 가산료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특§ 81)(실§ 20)(디§ 82)
상표	•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월 이내 ※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신청한 경우 1회 30일 연장

13. 이의신청과 관련된 기간(특허·실용신안의 이의신청은 무효심판으로 통합)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디자인]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 이내(디§ 68)
 [상표] :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상§ 60)

-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 할 수 있는 기간
 [상표] :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상§ 61)
 [디자인] :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디§ 69)

14. 존속기간

특허	특허권 설정등록 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특§ 88)
실용신안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후 실용신안출원일로부터 10년(실§ 22)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디§ 91)
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상§ 83), 갱신등록신청으로 10년씩 연장 가능

15.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기간

- <1987. 7. 1. ~ 1990. 8. 31. 이전 특허 출원> – 연장신청제도
 특허존속기간 만료일 3년 전부터 전속기간만료일까지

- <1990. 9. 1. 이후 특허출원> – 연장출원제도
 특§ 89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다만 존속기간의 만료전 6월 이후에는 할 수 없다.(특§ 90②)

16.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기간

- <2012. 3. 15. 이후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 연장등록출원제도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특§ 92의3②)(실§ 22조의3②)

17. 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청구기간

-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지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다만, 지정된 기간(보정기간 또는 특허료 등의 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 16②)(실§ 3)(디§ 19)(상§ 18②)

18.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 최초의 공시송달 :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 경과 후(특§ 219③)(실§ 44)(디§ 210③)(상§ 219③)
-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 : 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날(특§ 219③)(실§ 44)(디§ 210③)(상§ 219③)

19. 특허료 보전 기간

-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특§ 81의2)(실§ 20)(디§ 83②)(상§ 76)

20. 불복심판 청구기간

-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특§ 132의3)(실§ 33)(디§ 120)(상§ 116)
 ※ 디자인, 상표의 경우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 가능(디§ 119)(상115)

21. 비밀디자인 청구가능기간

-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디§ 43)

22.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기간

-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상§ 84)

23. 상표권의 소멸

-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상§ 106)
-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종결 등기일 다음날에 소멸(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상§ 106)
-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소멸
 상품분류전환등록시 기재되지 않은 지정상품은 분류전환등록일에 소멸, 분류전환등록이 존속기간 만료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소멸(상§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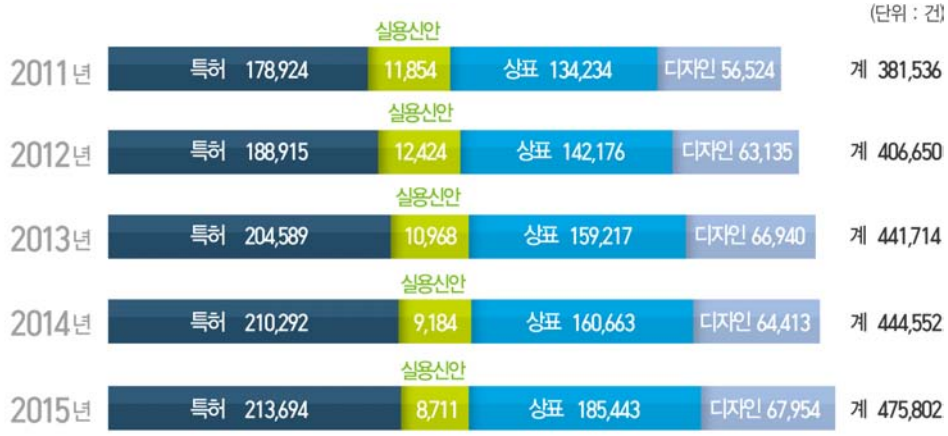
05 | 붙임 |

출원·등록·심사 및 심판 주요통계

1. 출 원

■ 권리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국제특허·상표·디자인(지정관청, 지정국 기준) 출원건수 포함

■ 출원인 국적별 출원현황('15)

(단위 : 건)



* 국제특허·상표·디자인(지정관청, 지정국 기준) 출원건수 포함

■ PCT 국제특허출원 현황

(한국특허청 접수기준, 단위 : 건, %)



* 국제특허출원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을 이용한 특허출원으로,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 해외 조약국의 특허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 주요국 PCT 국제특허출원 현황

(WIPO 접수기준, 단위 : 건)



* 출처 :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PCT Yearly Review

2. 등 록

■ 권리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권리자 국적별 등록현황('15)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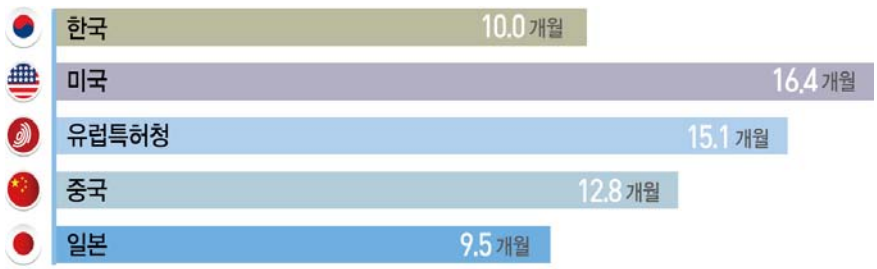


3. 심 사

■ 연도별 특허 심사청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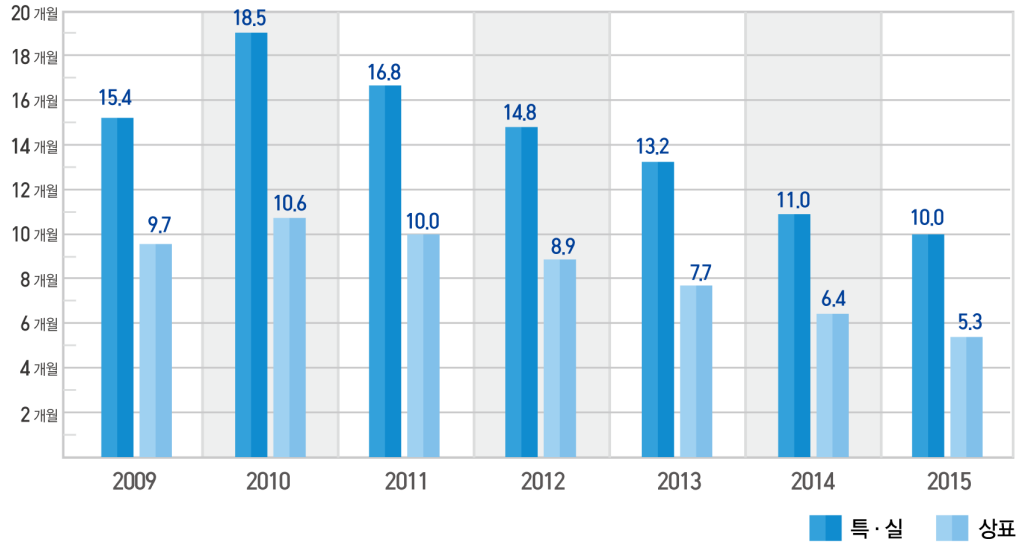
■ 주요국 특허 심사처리기간('15)



* 유럽특허청 : 38개 유럽국가로 구성

■ 우리나라 심사처리기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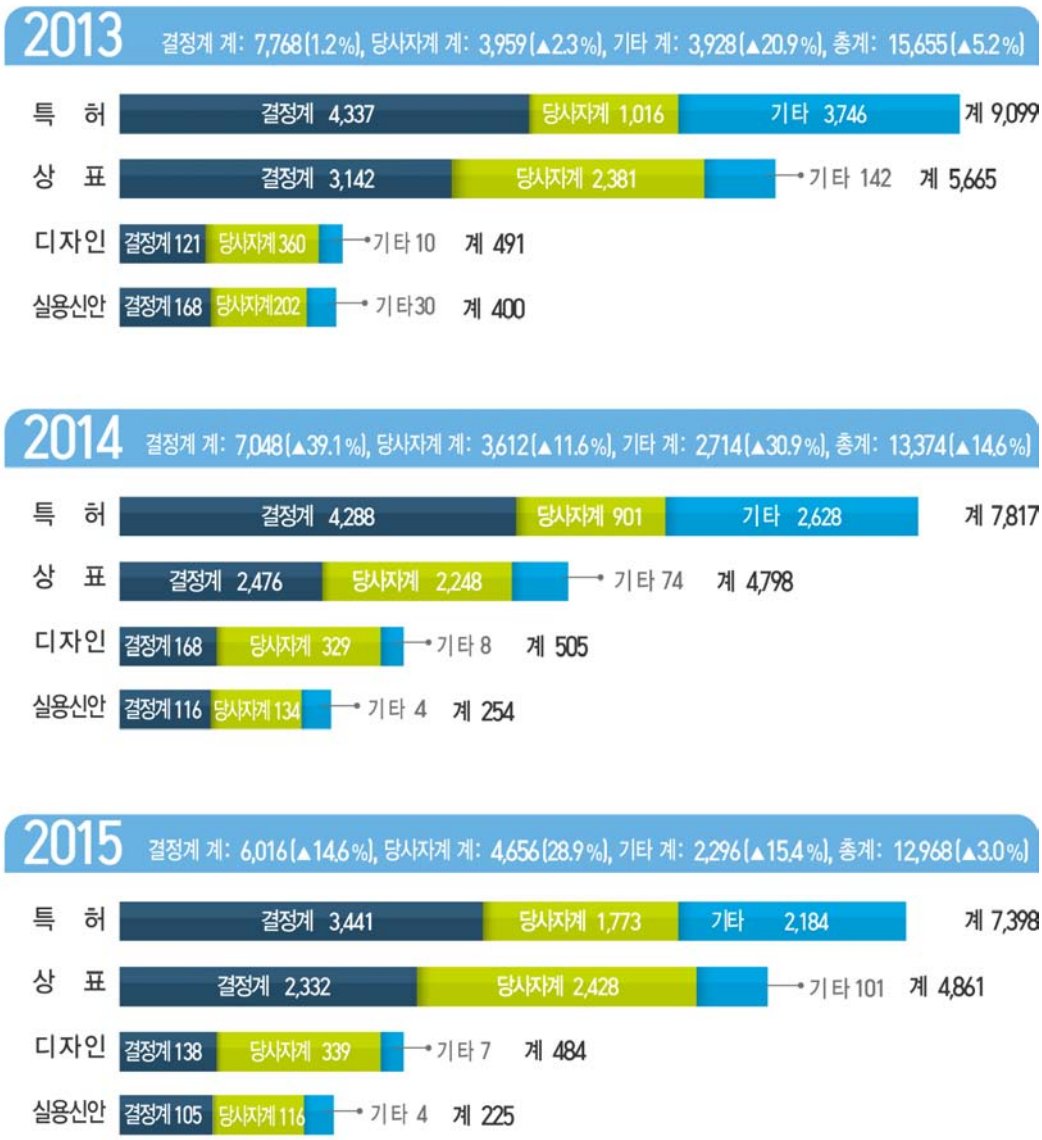
(단위 : 개월)



4. 심 판

■ 심판처리 현황

(단위 : 건)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기타는 심사전치등록 및 절차무효처분

※ 지식재산권 통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지식재산통계 → 통계간행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 | 붙임 |

문의전화 안내 일람표

분야	부서명	전화번호
종합상담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서류접수, 각종 민원 업무	고객지원실	042)481-5226
	서울사무소	02)568-8155
국내 출원	특허청 출원과	042)481-5414
국제출원 (PCT, 마드리드, 수수료 포함)	특허청 국제출원과	042)481-5208(PCT), 5279(마드리드)
등록	특허청 등록과	042)481-5247
심판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856
수수료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195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	042)601-4321, 4347
창출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052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930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63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281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중소기업팀	02)3475-4345. 4221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장전략팀	02)3475-8590, 1302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61, 2829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02)3459-2806
활용지원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807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02)3459-2935, 2938, 2947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02)2155-3761
보호 및 분쟁지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184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8210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553-586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02)3460-7351

07

| 붙임 |

색인(찾아보기)

색인 필수 표시 용어

〈ㄱ〉

(근)질권 ····· 100
결정계 심판 ····· 109, 111, 114
관련디자인제도 ····· 80
국내 우선권주장 ····· 73
국내단계 ····· 54
국제단계 ····· 54
국제사무국 ····· 52, 56, 59, 65, 68
국제예비심사(기관) ····· 53, 56
국제조사(기관) ····· 52, 56
권리 이전 ····· 97, 98
글자체디자인제도 ····· 81
기간연장신청 ····· 115, 116
기초등록 ····· 61
기초출원 ····· 61

〈ㄷ〉

다류 1출원제도 ····· 77, 85
당사자계 심판 ····· 110, 111, 114
도달주의 ····· 14, 56

〈ㅁ〉

말소등록 ····· 99, 100

〈ㅂ〉

변경출원 ····· 19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 81
본국관청 ····· 61
부분디자인제도 ····· 81
분할납부제도 ····· 94
분할출원 ····· 45, 191
불사용 취소심판 ····· 42
비밀디자인제도 ····· 81
비전형상표제도 ····· 85

〈ㅅ〉

산업재산권 ··· 10, 11, 34, 92, 108, 167
상표등록 공고제도 ····· 25
선출원주의 ····· 14
설정등록료 ····· 86, 94
속지주의 ····· 14
수리관청 ····· 48, 56, 68
신규성 ····· 15
실시권(사용권) ····· 99
심사청구제도 ····· 75, 114

〈ㅇ〉

연차등록료 ····· 95, 96, 104
영상 심판사건 설명회 ····· 28
우선심사제도 ····· 88~90
이용발명 ····· 20

〈ㅈ〉

재심사청구 ····· 76, 77, 114
저작권 ····· 13, 20
저촉관계 ····· 22
조약 우선권주장 ····· 73
존속기간 갱신 등록(료) ····· 96, 9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제도 ···· 85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제도 ··· 85
지정관청(선택관청) ····· 53, 54, 56
지정국관청 ····· 59, 61, 68
직권보정 ····· 76
직무발명 ····· 20
진보성 ····· 16

〈ㅊ〉

출원공개제도 ····· 74

〈ㅌ〉

특허고객번호 ····· 38, 39, 47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57
특허취소 신청제도 ····· 23

〈ㅍ〉

포괄위임등록 ····· 20

〈ㅎ〉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 81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발행일 | 2016년 9월
발행인 | 특허청장 최동규
발행처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www.kipo.go.kr)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5225
FAX. (042)472-1360